공개용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

(조사번호 : 구제 23-2026-2호)

2026. 8. 20.

무 역 조 사 실

안내 사항

< 비밀취급 자료 관련 >

○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밀취급을 요청한 자료, 관세청 수입통계자료, 정보유통기업의 유료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함

○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 등의 자료는 환산값과 증감률을 표시함

- 환산값은 예시와 같이 기준 연도 값을 설정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을 반영한 환산값을 제시하되, 기준 연도 값과 환산값은 본문과 표에 *"12,345"*(*기울임*, 밑줄)의 형태로 표시함

※ 예) 기준 연도 값: *1,000*

○ '가격 차이' 자료는 공개될 경우, 상대방의 가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수치를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을 표시함

○ 시장점유율, 국내 동종물품 가동률, 물량 비중, 원가구성비 등 비율(%)로 표시되는 자료는 수치를 공개하지 않되, 변동폭(%p로 표시)을 표시함

※ 예) 10.0% → 15.0%로 증가한 경우 5.0%p로 표시

○ 기준 연도 값이 음의 부호('-')인 경우에는 '음수(또는 적자)'로 표시하고 다음 연도에는 '음수(또는 적자) 확대', '양수(또는 흑자) 전환' 등으로 표시함

< 목 차 >

Ⅰ. 예비조사 개요 ····· 1
1. 신청인, 조사대상물품 공급국 및 공급자 ····· 1
2. 조사대상물품 ····· 3
3.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여부 ····· 5
4.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국내산업의 범위 ····· 9
5. 산업 및 수급 현황 ····· 13
6. 비밀취급 여부 검토 ····· 16

Ⅱ. 덤핑사실 ····· 20
1. 덤핑사실 조사대상공급자 선정 ····· 20
2. 덤핑사실 조사경과 ····· 21
3. 공급자별 덤핑사실 조사 ····· 23
4. 덤핑사실 예비조사 결과 종합 ····· 54

Ⅲ. 국내산업의 피해 ····· 56
1. 국내산업 발전(확립)의 실질적 지연 여부 ····· 56
2.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 ····· 57
가. 산업피해 분석 대상 국내생산자 ····· 58
나.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 58
다.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 가격에 미치는 효과 ····· 60
라. 덤핑물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63

Ⅳ. 덤핑물품과 국내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 ····· 73
1.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 73
2. 덤핑물품 수입 이외 기타 다른 요인의 영향 ····· 76
3. 인과관계 종합 검토 ····· 83

Ⅴ. 이해관계인 기타의견 검토 ····· 84

Ⅵ. 무역위원회가 결정할 사항 ····· 85

< 참고자료 >

참고 1. 국내산업피해 조사 경과 ····· 88
참고 2. 덤핑사실 조사 경과 ····· 89

공개용

Ⅰ. 예비조사 개요

1. 신청인, 조사대상물품 공급국 및 공급자

가. 신청취지

○ ’26.3.17.[1] 주식회사 영진은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덤핑수입(신청인 제시 덤핑률 : 중국 20.03%, 대만 34.32%)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함

나. 신청인

○ 주식회사 영진(이하 “영진”)[2]

- 대리인 : 법무법인 울림(변호사 김태우),
더인터내셔날트레이드컨설팅(회계사 김종탁)

< 신청인 현황 >

(’25년 기준)

구분 \ 신청인		영진
회사설립 연·월·일		1978.8.1.
대표자		박제성
주 소	본사·공장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38 (삼정동)
자본금		1,530백만원
매출액	총매출액	35,909백만원
	동종물품	xxx백만원
주요 생산제품		고체 수산화나트륨, 인산염, 규산염 등의 화공약품
종업원수		xxx명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1) 신청인은 당초 ‘26.1.30.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무역위원회고시 제2025-7호) 제16조제2항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조사신청서 보완요청에 대하여 신청인이 ‘26.3.17. 최종 보완된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자료가 제출된 날을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봄

2) 이하 본 보고서에서 회사명은 “영진” 등과 같이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하여 기재함

다. 조사대상물품 공급국(또는 관세영역[3]) 및 공급자

공급국 / 관세영역	공급자 (수출자, 생산자)	신청인 제시 덤핑률	대응 여부
중 국	동루이 (Shandong Befar Group Dongrui Chemical Co., Ltd.) 및 그 관계사	20.03%	대 응
	스카이 임펙스 (Skyey Impex Limited)		미대응
	유니라이온 (Tianjin Unilion Supply Chain Co., Ltd.)		미대응
대 만	포모사 (Formosa Plastics Corporation)	34.32%	미대응

○ 조사대상공급자 대리인

- 중국동루이 및 그 관계사 : 법률사무소 신아(변호사 심규황), ㈜리인타(회계사 김동준)
- 중국스카이 임펙스, 유니라이온, 대만포모사 : 대리인 미지정(조사 미대응)

라. 조사대상기간

○ 덤핑사실 조사대상기간 : ’25.1.1.부터 ’25.12.31.까지

○ 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 : ’22.1.1.부터 ’25.12.31.까지

3)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이하 "마라케쉬 협정") 제12.1조는 국가뿐 아니라 대외무역 관계 등에서 완전한 자치권을 보유한 ’독자적 관세영역’의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대만은 해당 지위로 ’02.1.1. WTO에 가입하였는바, 마라케쉬 협정에 부속된 다자간무역협정인 WTO 반덤핑협정은 대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한편, 마라케쉬 협정은 ’국가(country)’라는 용어에 독자적 관세영역인 회원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WTO는 반덤핑조치 통계 등의 공식 발간자료를 통해 국가와 관세영역을 명확히 구분·표기하고 있는바, 조사실은 이러한 국제실무 관행과 대만의 WTO 회원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 대만을 ’관세영역’으로 지칭함. 다만, 관세법 등 국내법상 용어를 인용하거나 그 적용을 기술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상의 용어(’공급국’ 등)를 그대로 사용하며, 이는 용어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정한 법적·정치적 지위에 관한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

* 대만의 WTO 회원명 :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약칭 ‘Chinese Taipei’)

2. 조사대상물품

가. 품명 : 고체 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 (caustic soda)[4] solid)

- 관세품목분류(HSK) : **2815.11.0000**[5]
- 관세율 : 기본세율 8.0%, WTO 협정세율 5.5%(대만), 한-중 FTA 협정세율 0%(중국)

나. 조사범위 :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고농도로 농축·가공하여 제조한 백색의 고체 수산화나트륨으로, NaOH의 화학식을 가진 것

다. 물리적 특성 : 백색의 무른 고체로,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스스로 녹아 수용액이 되는 조해성(潮解性)이 강하고, 대표적인 강염기(강알칼리)[6] 물질로서 유지류(기름) 및 단백질 분해능력이 탁월함

라. 용도 : 범용 무기화학제품[7]인 조사대상물품은 세척 및 중화(pH 조절) 등의 기능이 요구되는 각종 산업 분야*에 널리 사용됨

* 용도 예시 : 비누·세제 제조, 공정 pH 조절, 산성폐수 중화 등의 수처리, 금속 표면처리, 섬유의 가공 및 정련, 펄프·제지의 정련 등

마. 제조공정 : 원재료인 농도 50% 내외의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고온에서 농축하고, 냉각·고체화한 후 성형, 포장을 거쳐 생산함

4) 강부식성인 수산화나트륨은 흔히 '가성(苛性)소다'로도 불리며, 세계관세기구(WCO)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HS코드 2815.1(액체·고체 수산화나트륨)의 공식품명을 'Sodium hydroxide (caustic soda)'로 명명하고 있음

5) 조사대상물품의 관세품목분류(HSK) 정의

관세품목분류			정 의	
			한 글	영 문
2815	**1-**		**수산화나트륨 [가성(苛性)소다]**	**Sodium hydroxide (caustic soda)**
2815	**11**	**0000**	**고체**	**Solid**
2815	12	0000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In aqueous solution (soda lye or liquid soda)

6) 물 또는 산(Acid)과 접촉 시 반응열을 일으키며 강력히 반응하므로 취급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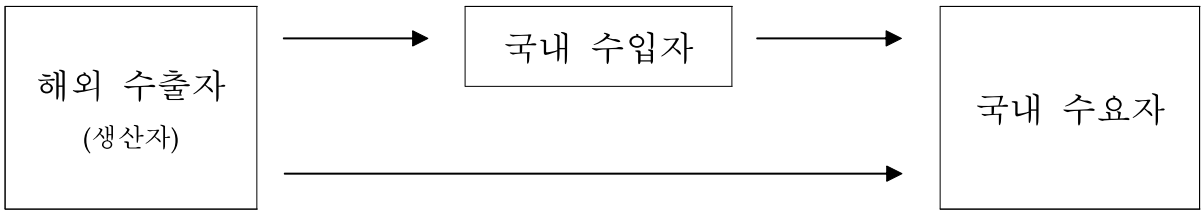
7) 황산, 수산화나트륨, 암모니아 등과 같이 대량 생산·소비 체계를 갖추고 전방산업 전반에 기초원료로 투입되는 무기화학물질로서, 제품 간 차별성이 낮아 수급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이 거래의 핵심 요인임

< 제조공정[8] >

1단계	원료 투입	원재료인 농도 50% 내외의 액체 수산화나트륨[9]을 농축기에 공급
2단계	농축	원재료를 고온·저압 상태의 낙하박막식 농축기[10]에 통과시켜 수분을 제거하고 농축하는 핵심 공정
3단계	고체화·성형[11]	고농도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회전하는 냉각 롤러 표면에 얇게 도포한 후 빠르게 식혀 고체화하고, 칼날로 긁어내 조각 형태로 생산
		고농도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타워 상단에서 분사하여 냉풍에 의해 굳혀 미세한 방울 형태로 생산 등
4단계	포장·저장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습기에 민감하므로 밀폐된 용기 또는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저장

바. 유통경로 : 조사대상물품은 국내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생산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국내 수요자가 직접 수입함

< 조사대상물품 주요 유통경로 >



8) 제조공정은 보편적인 공정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생산자별로 적용기술 및 공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물품의 정의 및 특성 등이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조사대상물품에 해당함

9) 염수(소금물)를 정제 후 전기분해하여 농도 30% 내외의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만든 뒤, 증발설비(Evaporator)에서 물을 제거하여 농도 50% 내외로 농축시킨 것

10) 낙하박막식 농축기 : 액체를 얇은 막 형태로 흘려보내 물만 선택적으로 증발시켜 농도를 높이는 장치

11)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형태는 플레이크, 펄, 펠릿 타입 등으로 다양하나, 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이러한 형태와는 무관하며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함

3.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여부

< 주요 검토사항 >

○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또는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조사대상물품과 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동종물품의 범위를 정함

관련 법규

○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 영 제59조제4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가. 품명 및 조사범위 : 조사대상물품과 동일함

나. 물리·화학적 특성 등

○ 국내생산품은 조사대상물품과 물리·화학적 특성, 구성요소 및 용도 측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함

<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물품의 주요 품질 항목 비교[12] >

품질 시험항목	분류	단위	국내동종물품	조사대상물품	
			영진	중국산[13]	대만산
수산화나트륨 ($NaOH$)[14]	순도	%	xxx	xxx	xxx
탄산나트륨 (Na_2CO_3)[15]	불순물	%	xxx	xxx	xxx
염화나트륨 ($NaCl$)[16]		%	xxx	xxx	xxx
산화철 (Fe_2O_3)[17]		%	xxx	xxx	xxx

* 자료 : 조사신청서

12)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동일한 화학식($NaOH$)을 가지며, 표에 제시된 네 가지 시험항목은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품질을 구성·좌우하는 주요 성분임. 신청인에 따르면,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끓는점·녹는점 등의 물리적 특성이 아닌 순도와 불순물 함량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제품으로, 신청인은 고체 수산화나트륨 98% 제품에 대한 품질 시험성적서를 제출함.
참고로 KS 규격에서는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품질 기준을 수산화나트륨·탄산나트륨·염화나트륨·산화철 네 가지 성분의 함량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또한 조사신청서에 첨부된 신청인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르면 98% 농도의 고체수산화나트륨의 녹는점은 318℃, 끓는점은 1,390℃이며 70~75% 농도의 경우 녹는점은 약 65℃, 끓는점은 약 181.5℃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동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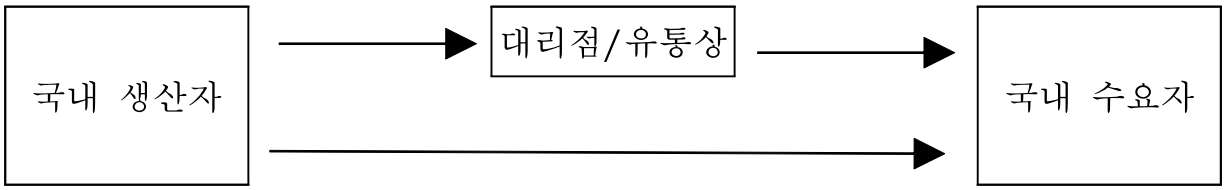
다. 제조공정

○ 국내생산품은 조사대상물품과 제조공정이 동일함

라. 유통경로

○ 국내생산품은 조사대상물품과 동일하게 최종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되거나 중간상을 통해 판매되고 있음

<국내생산품의 유통경로>



13) 대만산의 경우 피신청인 중 하나인 'Formosa'의 제품을 분석하였으나, 중국산의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시험성적서를 확보하지 못하여 중국 내 유통되는 중간상('L&S International')의 판매 제품을 분석함

14) 수산화나트륨(NaOH) :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주성분으로, 강염기성을 나타내는 실제 유효 알칼리 부분이며, "유효분" 또는 "알칼리도"로 표시하고, 해당 함량이 높을수록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순도와 반응성이 좋다고 평가함

15) 탄산나트륨(Na_2CO_3) : 고체 수산화나트륨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CO2)를 흡수해 생기는 부산물로, 유효 알칼리도를 떨어뜨리고 비누·펄프 등 일부 공정에서는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탄산분"을 낮게 관리함

16) 염화나트륨(NaCl) : 원료 염수(소금물)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남아 있는 소금 성분으로, 전도도·부식성 등에 영향을 주므로 고품질 고체 수산화나트륨일수록 NaCl 함량을 엄격히 제한함

17) 산화철(Fe_2O_3) : 설비·배관·원료에서 유입되는 철(Fe) 불순물이 산화된 형태로, 미량 금속 불순물 지표이며 특정 공정(반도체·전자·정밀화학 등)에서 제품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철분(Fe)"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리함

마. 품질 및 소비자 평가

○ **(수입자 주장[18][19])** 조사대상공급자는 99% 순도 및 펄·펠릿 등 다양한 제형 또한 생산 가능하나, 국내생산자는 98% 순도 및 플레이크 형태의 제품만 생산 가능하고, 순도 차이로 인해 반도체 공정 등 특정 용도에는 사용하기 어려움

○ **(신청인 주장[20])**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고체 상태로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주로 용해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농도로 조절하여 사용하므로 1% 내외의 순도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로 볼 수 없음

- 펠릿의 경우 국내 수요량이 매우 적고, 펄 타입에 대한 수요는 일부 수요자가 작업 편의성 등 기호에 따라 선호함에 따른 것으로, 신청인 제품(플레이크 타입)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성격의 수요임

- '26년 상반기 대만산 물품의 국내 공급이 일시 제한되었던 시기에 신청인 제품이 국내 유통망을 통해 일부 수요자에게 대체 공급된 사례가 확인된바, 이는 국산품과 대만산 물품 간 대체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냄

- 별도 등급으로 관리되는 반도체 전용 수산화나트륨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신청인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정밀화학 회사와도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인 제품이 해당 산업에서 사용 가능한 품질 수준임을 나타냄

○ **(조사실 검토)**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순도 및 형태 차이에 따라 특정 용도에 사용이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다만 본조사 과정에서 구체적·객관적 근거와 함께 관련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 다시 검토할 수 있음

18) 새한실리켐 이해관계인 회의 발언요지('26.6.12. 제출)

19) 수입자(새한실리켐)는 이해관계인 회의 이후 수요자인 대정화금 주식회사로부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경우 플레이크·펄·펠릿 등 여러 형상으로 제조되고 있으며, 순도에서도 99%, 98%, 97%, 95% 등 다양하게 제조·유통되고 있어 사용자는 형상과 순도를 비교해 용도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음. 용도에 따라 펄 형태만 사용하는 경우 펠릿이나 플레이크는 대체하기 불편한 것이며, 99% 순도만 사용하는 경우 98%, 97% 등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각 용도에 맞체 형상과 순도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실정임

20) 영진 이해관계인 회의 이후 추가 의견서('26.7.7. 제출)

- 또한, 생산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대만산 제품의 공급이 일시 중단된 시기 일부 유통 업체들에 대한 매출 물량이 급증하여 대체 사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추후 현지실사를 통해 해당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할 예정임

- 아울러, 신청인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정밀화학 회사와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추후 현지실사를 통해 구체적인 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할 예정임

바. 종합 검토

○ 이해관계인 답변 및 조사실 검토에 따르면 국내생산품은 조사대상물품과 물리·화학적 특성, 용도, 제조공정, 유통경로, 품질 등 측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상의 동종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4.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국내산업의 범위

가.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

1) 국내생산자

○ 국내생산자는 영진 및 범창산업 2개사임

국내생산자	'24년 생산량(톤)	생산비중(%)
영진	xxx	xxx
범창산업	xxx	xxx
합계	xxx	100.0

* 자료 : 조사신청서, 소관부서(산업부 화학산업과) 자료, 국내생산자 답변서

2) 수입자

○ xxx, xxx, xxx, xxx, xxx, xxx 등

3) 수요자

○ xxx, xxx, xxx, xxx, xxx 등

나. 국내산업의 범위

< 주요 검토사항 >

○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확인

○ 국내생산자가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 국내생산자가 수입자이거나, 외국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에서 제외할 수 있음

관련 법규

○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및 제5항

④ 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⑤ 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

② 영 제59조제4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영 제59조제6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

③ 영 제59조제4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생산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내생산자

○ 조사신청서와 해당 산업의 소관부서 의견 자료에 따르면, 국내생산자는 영진 및 범창산업 2개사임

2)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

가) 조사개시 당시 조사신청 찬반 현황

○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의 생산량 합계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명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의 100%로서 최소기준인 50%를 초과하고, '24년 국내 총생산량의 100%로서 최소기준인 25% 이상이므로 조사신청의 대표성을 인정하여 조사를 개시함

< 국내생산자의 조사신청 찬·반 의견 현황 ('24년 기준) >

국내생산자	생산량 (톤)	생산비중 (%)	조사신청 찬성여부
영진	xxx	xxx	찬성
범창산업	xxx	xxx	찬성
총계	xxx	100.0	

* 자료 : 조사신청서, 소관부서(산업부 화학산업과) 자료, 국내생산자 답변서

나) 생산자 답변서 검토

○ 조사실은 국내생산자인 영진, 범창산업 총 2개사에 국내산업피해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26.4.13. 발송하였음

- 영진은 '26.5.14. 답변서를 조사실에 제출하였고, 범창산업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영진은 조사신청서 접수일인 '26.3.17. 이전 6개월 동안('25.9.17.~'26.3.16.)에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고,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 및 수입자와 특수관계도 없음

- 따라서 영진은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라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됨

다) 검토 종합

○ 신청인인 영진은 이용 가능한 국내산업피해 지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였고, ‘24년 기준 동 기업의 동종물품 생산량이 국내 동종물품 총 생산량의 xxx%로 상당부분을 점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 이에 국내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국내산업”은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영진”의 동종물품 생산사업으로 함

5. 산업 및 수급 현황

가. 세계시장 동향[21)]

○ OPIS의 CMA(Chemical Market Analytics)[22)] 자료에 따르면, ’25년 기준 전세계 수산화나트륨(액체 및 고체) 생산능력[23)]은 약 xxx천톤으로 ‘22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xxx% 증가하였으며, 중국은 최대 생산국으로 세계 생산능력의 xxx%를 차지함

< 세계 수산화나트륨 국가별 생산능력 추이(’22~‘25) >

(단위 : 천톤, %)

순위	국가	‘22년	‘23년	‘24년	‘25년	‘25년 비중	연평균 증감률
비공개							

* 자료 : Chemical Market Analytics by OPIS(2025)

21) 시장 전반에 대한 참고자료로, 일부 조사비대상 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다만, 이하 본 보고서의 조사 분석은 조사대상물품에 한정해 수행됨

22) Chemical Market Analytics by OPIS(Oil Price Information Service, 미국 Dow Jones 계열 화학시장 정보기관) 「World Analysis – Chlor-alkali」 자료 참조

23) 해당 통계는 액체 및 고체를 합산한 전체 수산화나트륨을 순수 NaOH(물 제외) 100%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며, 근본적으로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농축·성형한 2차 가공품인바 생산 단계에서 별도 집계하는 국가가 거의 없어, 조사 대상인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한정한 수치 산정은 어려움. 동 통계에서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비중은 약 6~7% 내외로 추정(수출물량 기준*)

* 전세계 액체 수산화나트륨 수출량은 2024년 1,865만톤, 2025년 1,939만톤이며 고체 수산화나트륨 수출량은 2024년 126만톤, 2025년 147만톤으로, 전체 수산화나트륨 수출량 중 고체 비중은 2024년 6.3%, 2025년 7.0%를 차지함

○ ’22년부터 ‘25년까지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세계 수출 시장은 연평균 8.7% 상승하였고, 중국(45.7%) 및 인도(30.7%) 2개국이 세계 수출의 76.4%를 차지하는 과점 구조임

○ ’22년부터 ‘25년까지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세계 수입 시장은 연평균 9.1% 하락하였고, 수입은 아프리카 및 신흥국에 분산된 구조임

< 세계 고체 수산화나트륨 수출 현황(’22~‘25)[24] >

(단위 : 천톤, %)

순위	국가	‘22년	‘23년	‘24년	‘25년	‘25년 비중	연평균 증감률
전세계 총수출		1,144	1,480	1,258	1,470	100.0	8.7
1	중국	585	529	473	671	45.7	4.7
2	인도	-	314	341	451	30.7	-
3	대만	80	66	52	58	3.9	-10.1
4	태국	31	36	48	50	3.4	17.8
5	프랑스	55	51	58	40	2.7	-10.2
6	폴란드	65	60	42	30	2.1	-22.3
7	벨기에	22	29	34	27	1.8	7.1
8	페루	6	9	23	25	1.7	65.2
9	미국	16	15	17	17	1.2	2.2
10	터키	17	20	24	16	1.1	-1.0

* 자료 : 산업연구원 고체 수산화나트륨 경제·산업분석, ITC trade(2025)

< 세계 고체 수산화나트륨 수입 현황(’22~‘25)[25] >

(단위 : 천톤, %)

순위	국가	‘22년	‘23년	‘24년	‘25년	‘25년 비중	연평균 증감률
전세계 총수입		1,296	1,388	1,313	972	100.0	-9.1
1	인도네시아	57	66	100	97	10.0	19.6
2	남아프리카공화국	39	48	58	58	5.9	13.8
3	코트디부아르	39	46	47	52	5.4	10.7
4	콩고	32	23	41	46	4.8	12.6
5	브라질	23	27	29	45	4.6	25.3
6	카자흐스탄	31	42	23	44	4.5	12.6
7	튀르키예	60	55	51	41	4.3	-11.6
8	미국	23	26	39	36	3.7	16.2
9	페루	39	26	23	28	2.9	-10.1
10	호주	7	6	8	26	2.6	54.4

* 자료 : 산업연구원 고체 수산화나트륨 경제·산업분석, ITC trade(2025)

24) HS Code 2815.11 기준
25) HS Code 2815.11 기준

나. 국내시장 수급현황

○ 국내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수요는 '25년 기준으로 xxx톤이며, 이중 국내 소비가 xxx톤으로 xxx%, 국내생산품 수출이 xxx톤으로 xxx%를 차지함

○ 국내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공급은 '25년 기준으로 xxx톤이며, 이중 국내 공급이 xxx톤으로 xxx%, 외국산 제품 총수입이 xxx톤으로 xxx%를 차지함

(단위 : 톤, 백만원, %)

구분 \ 연도			'22년	'23년	증감률	'24년	증감률	'25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수요	국내소비 (국산품 내수 + 총수입)	물량	*1,000*	*953*	-4.7	*1,044*	9.6	*895*	-14.3	-3.6
		금액	*1,000*	*944*	-5.6	*1,004*	6.4	*971*	-3.3	-1.0
	수출 (국산품 수출)	물량	*1,000*	*178*	-82.2	*712*	300.0	*2,425*	240.6	34.3
		금액	*1,000*	*155*	-84.5	*629*	305.9	*2,435*	287.0	34.4
합 계		물량	*1,000*	*952*	-4.8	*1,044*	9.7	*898*	-14.0	-3.5
		금액	*1,000*	*942*	-5.8	*1,003*	6.5	*974*	-2.9	-0.9
공급	국내공급 (국산품 내수+수출)	물량	*1,000*	*795*	-20.5	*804*	1.1	*644*	-19.9	-13.7
		금액	*1,000*	*861*	-13.9	*864*	0.3	*731*	-15.4	-9.9
	수입 (총수입)	물량	*1,000*	*1,316*	31.6	*1,603*	21.8	*1,491*	-7.0	14.2
		금액	*1,000*	*1,088*	8.8	*1,257*	15.5	*1,415*	12.6	12.3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6. 비밀취급 여부 검토

< 주요 검토사항 >

○ 비밀취급 요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비밀취급 요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줄 것을 요청했는지 여부

○ 비밀취급 요청한 자료가 공개되는 경우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비밀취급 요청인이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세한 요약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규

○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59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
3. 거래처의 성명·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관련 법규

○ WTO 반덤핑협정 제6.5조
성격상 비밀인 정보 (예를 들어 누설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되거나 정보 제공자 또는 그 정보의 취득원이 된 자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조사의 당사자가 비밀로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된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아니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5.1조
당국은 비밀정보를 제공한 이해당사자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의 평문요약문을 제공토록 요청한다. 이러한 요약문은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정보가 요약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요약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진술이 제공되어야 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5.2조
당국이 비밀보호 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고 정보의 제공자가 그 정보의 공개나 일반화된 또는 요약된 형태로 발표하는 것을 인가할 용의가 없는 경우 이러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사실이 적절한 출처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입증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정보를 무시할 수 있다.

가. 비밀취급 요청 서류

1) 이해관계인 제출서류

○ (국내생산자) 조사신청서, 국내생산자 답변서, 의견서 등

○ (조사대상공급자) 덤핑부문 조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등

○ (수입자, 수요자) 수입자 답변서, 수요자 답변서, 의견서 등

2) 정부 서류

○ 본 예비조사보고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등

나. 비밀취급 요청에 대한 정당한 사유 제출 여부

○ (국내생산자) 비밀취급 요청 서류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함

○ (조사대상공급자) 비밀취급 요청 서류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함

○ (수입자, 수요자) 비밀취급 요청 서류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함

다. 비밀취급 요청 자료 공개시 제출자 및 이해관계인 이익의 침해 우려 여부 등

○ (국내생산자) 생산현황 및 생산능력, 판매 및 재고현황, 판매가격, 매출액 및 영업이익, 제조원가, 고용 및 임금,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원재료 가격 등 공표되지 않은 내부 회계자료와 기타 거래처 정보, 유료 구매자료 등은 영업상의 비밀이거나 정보공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자료로서, 공개되는 경우 국내생산자의 경쟁력 저하 또는 이익의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요청함[26)]

○ (조사대상공급자) 생산·판매·재고현황, 손익·재무상태, 조직도 및 주주현황 등 공표되지 않은 내부 회계자료와 거래처 정보 등은 영업상 비밀이거나 정보공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공급자에게 영업상 불이익 등의 피해를 줄 수 있어 비공개를 요청함[27)]

○ (수입자, 수요자) 매출액, 수입실적, 통관비용, 판매실적, 재고량, 거래업체 등 자료를 영업상 비밀자료로서 비공개 요청했으며[28)], 해당 자료에 대해 비공개본 및 공개본을 제출함

○ (조사실 검토) 조사실은 비밀취급 요청자료가 공개될 경우 경쟁자들이 해당 정보를 직접 영업에 활용하는 등 자료 제출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거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생산자, 조사대상공급자 및 이해관계인이 비밀취급을 요청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함

26) 국내생산자 조사신청서('26.3.17. 제출), 국내생산자 답변서('26.5.14. 제출), 이해관계인 회의 발언요지('26.6.11. 제출), 이해관계인 회의 이후 추가 의견서('26.7.7. 제출) 등 참조

27) 동루이 및 그 관계사의 덤핑부문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26.5.26. 제출), 제1차 보충질의서에 대한 답변서('26.6.26., '26.6.30. 제출), 제2차 보충질의서에 대한 답변서('26.7.7. 제출) 참조

28) 수입자, 수요자 및 공급자(남덕물산, 국도화인켐, 미성종합물산, 수입자A(xxx), 수입자B(xxx), 브릿지켐, 영진화학, 수요자A(xxx)) 답변서('26.4.17.~5.14. 제출) 등 참조

- 제출된 자료 중 판매현황, 가격, 원가, 기타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등은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비추어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함[29)]

라. 비밀취급 요청 자료의 요약서 제출 여부

○ 비밀취급 요청 서류를 제출한 자들은 모두 합리적 이해가 가능한 수준의 상세한 공개본 자료를 제출함

○ 특히, 국내생산자는 비밀 취급요청한 정보(조사대상물품의 국내소비 점유율, 수입물량, 수입금액, 신청인의 생산능력, 생산량, 가동률, 판매현황 등)에 대해 조사대상기간 지수화된 자료 내지 증감률 정보를 제공하고 그 추세에 관한 설명을 포함함

마. 기타

○ 수입 관련 자료(물량, 금액, 거래내역, 거래처 등)는 개별기업의 영업비밀(무역거래) 자료로, 공개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비밀로 취급함

29) 관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참조

Ⅱ. 덤핑사실

1. 덤핑사실 조사대상공급자 선정

관련 법규

○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① … 조사대상공급자 선정에 있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공급자 수를 수입량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중

… 관련된 수출자 수가 너무 많은 경우 당국은 이용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을 사용하여, 검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출량이 큰 비율로 제한할 수 있다.

○ 본 건 개시 당시 조사실은 덤핑사실 조사대상기간('25.1.1.~12.31.) 동안의 공급국 및 관세영역별, 공급자별 대한국 수출물량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공급자를 선정하고, '26.4.7. 관보에 게재*하였음

* 조사개시 당시 선정되어 관보에 게재된 공급자는 중국 3개사(동루이, 스카이 임펙스, 유니라이온), 대만 1개사(포모사)이며, 선정된 공급자의 대한국 수출물량은 조사대상기간 해당 공급국 또는 관세영역별 대한국 총수출물량의 xxx%(중국), xxx%(대만)를 차지함

- 이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 총 4개사 가운데 중국의 동루이 및 그 관계사만이 조사참여 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참여하였고, 그 외 3개사(중국 2개사, 대만 1개사)는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

○ 한편, 조사실은 당초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뿐 아니라 그 밖의 공급자도 덤핑사실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조사참여 방법 등을 안내[30]하였으나, 중국과 대만의 그 밖의 공급자 중 어느 기업도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30) 본 건 조사개요, 조사참여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제출기간('26.4.7.~4.28.까지 약 3주간) 등을 전자관보,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공급국 정부 및 관세영역 당국 대상 서한 등을 통해 안내('26.4.7. 게재 또는 통지)함

2. 덤핑사실 조사경과

관련 법규

○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① … 다만, 공급자에게 덤핑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때에는 질의서 발송일로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하며 공급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무역위고시) 제7조

① 위원회가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 해외공급자에게 질의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질의서 발송일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동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 외에는 총 연장기한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 WTO 반덤핑협정 제6.1.1조 중

반덤핑조사에 사용되는 질의서를 받은 수출자 또는 외국의 생산자에게 응답을 위해 최소한 30일이 주어진다. 동 30일 기간의 연장을 위한 어떤 요청에 대하여도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이러한 연장은 가능한 한 허용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2조 중

반덤핑조사의 전과정을 통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진다.

○ 조사실은 본 건 덤핑사실 조사를 위하여 40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정하여 ’26.4.7.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음(당초 답변기한 : ’26.5.18.)

- 본 건 조사에 참여한 유일한 조사대상공급자인 중국의 동루이 및 그 관계사는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답변기한을 ’26.5.26.까지 7일 연장[31]하고, 이를 통보(’26.5.11.)하였음

- 동루이 및 그 관계사는 연장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26.5.26.)하였음

○ 조사실은 본 건 관련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26.4.7.~5.6.)하였으나, 조사대상공급자를 포함한 어느 이해관계인도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함

○ 조사실은 동루이 및 그 관계사의 답변내역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26.6.17. 제1차 보충질의서를 발송하였음(당초 답변기한 : ’26.6.24.)

- 동루이 및 그 관계사는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질의 항목별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답변기한을 차등 연장(2일 연장 16개 항목, 6일 연장 13개 항목)하고, 이를 통보(’26.6.22.)하였음

- 동루이 및 그 관계사는 각 질의 항목별로 연장된 기한 내에 제1차 보충답변서를 제출(각각 ’26.6.26., ’26.6.30.)하였음

○ 조사실은 동루이 및 그 관계사의 제1차 보충답변서 분석 결과, 재차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26.7.2. 제2차 보충질의서를 발송하였음

- 동루이 및 그 관계사는 기한 내에 제2차 보충답변서를 제출(’26.7.7.)하였음

○ 조사실은 공급자별 예비덤핑률 산정내역을 조사대상공급자(미대응 공급자 포함), 공급국 정부 및 관세영역 당국,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7일 이상의 의견수렴 기간(’26.7.29.~8.5.)을 가졌으나[32], 어느 이해관계인도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함

31) 7일 연장 후 답변기한은 ’26.5.25.이나, 해당 일자가 공휴일인 관계로 관세법 제8조에 따라 익일로 순연

32) 관련 법규상 ‘최종판정’ 전 핵심 고려사항의 통지 및 의견수렴만이 의무화(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반덤핑협정 제6.9조)되어 있으나, 조사실은 조사 전(全) 과정에 걸쳐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이익방어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비판정에 앞서서도 예비덤핑률 산정내역 통지 및 의견수렴을 진행함

3. 공급자별 덤핑사실 조사

< 주요 검토사항 >

○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 덤핑차액(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이)을 조사하여 덤핑사실 여부를 검토함

관련 법규

《 정상가격, 덤핑가격의 결정 및 가격비교 원칙 등 》

○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① "정상가격"이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 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 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④ "덤핑가격"이란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한다. (후략)

⑤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 시기 및 동일 거래단계(통상 공장도 거래단계)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해야 하며,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6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

① 영 제5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상거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종물품의 판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을 근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가 이하로 판매한 양이 100분의 20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있는 거래의 가중평균 판매가격이 당해 거래의 가중평균 원가 이하이고, 당해 원가 이하의 판매에 의하여 적절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의 원가 수준에 상당하는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협정 제2.2.1조와 동일)

2. 판매가격이 특수관계가 있는 당사자 간의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관련 법규

② 영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시장상황 등에는 공급국안에서의 판매량이 그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의 100분의 5 미만으로서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협정 제2.2조 주석2)

③ 영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성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판매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금액은 조사대상공급자에 의하여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실제 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후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자료에 기초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기초할 수 있다. (협정 제2.2.2조와 동일)

1. 조사대상공급자에 의하여 원산지 국가의 국내시장에서 동일부류의 물품의 생산·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금액
2. 원산지국가의 국내시장에서 동종물품의 생산·판매와 관련하여 다른 조사대상공급자에 의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금액의 가중평균
3.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된 이윤은 원산지 국가 안에서 동일부류의 물품을 다른 공급자가 판매하여 통상적으로 실현시킨 이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WTO 반덤핑협정 제2.1조 중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거래에서의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해당 물품은 덤핑,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국가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중

수출국 국내시장 내에 통상적 거래에 의한 동종물품의 판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출국 국내시장의 특별한 시장상황 또는 소규모 판매 때문에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덤핑마진은 해당 가격이 대표성 있음을 전제로 동종물품의 적절한 제3국 수출가격이나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과 이윤을 합산한 금액과의 비교로 결정된다.

○ WTO 반덤핑협정 제2.4조 중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간 공정한 비교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교는 동일한 거래단계, 일반적으로는 공장도 단계에서 가능한 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로 비교한다. 제반 판매조건, 과세, 거래단계, 수량, 물리적 특성 차이와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된 그 밖의 차이점을 포함하여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적절히 고려한다.

관련 법규

《 이용가능한 자료(FA, Facts Available)의 사용 》

○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및 제2항

①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추가 자료제출 또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할 경우 조사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는 한 공식 수입통계 등 다른 자료로부터 취득하거나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중

이해당사자가 합리적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부정의 예비·최종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후략)

○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 Ⅱ (제6.8조에 따른 입수가능한 정보) 중

1. … 당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국내산업에 의한 조사개시 신청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포함, 이용 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당국이 자유로이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7. 당국이 조사개시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여 2차적인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기초로 판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당국은 특별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공표된 가격표, 공식 수입통계 및 세관보고서 등과 같이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협조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관련 정보가 당국에 입수되지 않는 경우 이 상황이 그 당사자가 협조했을 때보다 그 당사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관련 법규

《덤핑률 산정방법 및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

○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text{덤핑률} = \frac{\text{조정된 정상가격} - \text{조정된 덤핑가격}}{\text{과세가격}} \times 100$$

○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1호

③ … 조사대상기간에 수출한 공급자 중 제2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공급국별 그 밖의 공급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1.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②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중평균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함에 있어 공급자가 다수인 때에는 공급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덤핑차액이 없거나 덤핑가격 대비 덤핑차액이 100분의 2 미만인 공급자

2.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차액 등을 산정한 공급자

○ WTO 반덤핑협정 제9.4조 중

당국이 조사대상공급자 수를 제한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반덤핑관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영의 마진 및 최소허용마진(2% 미만)과 협정 제6.8조에 따른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된 마진은 무시한다.

1. 선정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설정된 덤핑마진의 가중평균

< 중 국 >

가. 동루이(Shandong Befar Group Dongrui Chemical Co., Ltd.) 및 그 관계사

1) 공급자 개요 및 생산·판매 현황

○ 동루이 및 그 관계사(이하 이 목에서 "피신청인"이라 함)는 중국 산둥성에 소재하며, 조사대상물품 생산자 겸 판매자 xxx개사, 전문상사 xxx개사로 구성됨

< 피신청인 현황 >

피신청인 (생산자, 판매자)	약 칭	조사대상물품 관련 활동		
		생 산	내수판매	수출
① Shandong Befar Group Dongrui Chemical Co., Ltd.	동 루 이			
② Befar Group Co., Ltd.	빈화그룹			
③ Binhua Haiyue (Qingdao) Trading Co., Ltd.	하 이 웨			

- 동루이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생산·판매활동 요약)

- 빈화그룹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생산·판매활동 요약)

- 하이웨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생산·판매활동 요약)

○ 조사대상물품 판매에 있어 내수는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대한국 수출의 경우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조사대상물품 판매경로 요약)

< 조사대상물품 판매 경로 >

내수판매			대한국 수출		
		비관계 수요자 또는 관계 수요자[33]			비관계 수요자

33)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 피신청인의 조사대상기간 총매출액은 약 xxxRMB로, 한화 환산[34] 약 xxx원에 해당함

- 이 중 조사대상물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xxx%(약 xxxRMB, 약 xxx원)이며, 내수·수출 시장별 매출액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시장별 조사대상물품 매출 비중 >

공급자별 시장별 매출 비중[35]

○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생산능력은 연간 xxxDMT[36]이나, 조사대상기간 동안 설비능력을 초과 가동하여 연평균 가동률은 xxx%[37]에 달함

- 피신청인의 최신 설비증설 시점은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 한편, 피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함에 있어 xxx, xxx, xxx 등 주요 원가 구성요소를 관계사로부터 조달하였는데, 그 경로는 다음과 같음

34) 조사대상기간 평균 매매기준율인 197.76원/RMB 적용 (출처 : 한국은행)

35) xxx↔xxx, xxx↔xxx 간 내부거래 금액이 포함된 수치임

36)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 관계사 간 원가 투입요소 공급 경로 >

원재료 공급 경로 38),39)

○ 피신청인에게 원재료 등을 공급한 피신청인 외 xxx개사는 모두 xxx와 지분 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분 현황은 아래와 같음

< 피신청인 및 원재료 등 공급 관계사 간 지분 현황 >

지분 구조도

- 위와 같이 피신청인(빈화그룹, 동루이, 하이웨 3개사)은 xxx가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고, 조사대상물품의 생산·판매와 직접 연관되는바, 본 건에서 각 사를 단일경제실체로 간주하고 통합 덤핑률을 산정함

38)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39)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 아울러, 피신청인에게 원재료 등을 공급한 xxx개의 관계사 또한 xxx가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5% 이상 보유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xxx 임원이 해당 회사의 임원직을 겸하고 있는 등[40], 조사대상물품 생산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특수관계자 지위에 있음을 재차 확인함

2) 답변서 분석 경과 ('26년)

○ 4. 7. :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 (당초 답변기한 : 5.18.)[41]

○ 4. 28. :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

○ 5. 6. :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및 CCN 관련 의견수렴 기한 (별도의견 없음)

○ 5. 11. : 피신청인 요청에 따른 답변기한 연장 (연장 후 답변기한 : 5.26.)

○ 5. 26. : 답변서 접수

○ 6. 17. : 제1차 보충질의서 송부 (당초 답변기한 : 6.24.)

○ 6. 22. : 피신청인 요청에 따른 답변기한 차등 연장 (연장 후 답변기한 : 6.26., 6.30.)

○ 6. 26. : 제1차 보충답변서 접수 (16개 질의항목에 대한 답변)

○ 6. 30. : 제1차 보충답변서 접수 (13개 질의항목에 대한 답변)

○ 7. 2. : 제2차 보충질의서 송부 (답변기한 : 7.7.)

○ 7. 7. : 제2차 보충답변서 접수

○ 7. 29. ~ 8. 5. : 예비덤핑률 산정내역 통보 및 의견수렴 (별도의견 없음)

40) xxx가 상하이증권거래소에 공시한 바에 의하면, xxx xxx xxx

3) 답변서 검토

○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영통계자료, 내수판매 및 대한국 수출자료, 조정요소, 제조원가 및 판관비[42], 조사대상물품 설명자료 등을 검토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두 차례에 나누어 보충질의함

- **(1차 보충질의)** 각 사 생산·판매·연구조직 운영현황, 관계사 간 거래실적(매입·매출 일체), 원재료 등 공급 관계사의 감사보고서 및 회계자료, 주요 거래처별 매출채권 보조원장, 조사대상물품 및 액체 수산화나트륨의 월별 원가 집계·배부내역 및 제조원가 명세서 등에 관하여 질의함

- **(2차 보충질의)** 1차 보충답변 시 답변내역이 미진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동루이의 xxx xxx xxx xxx 사유, 특정 관계사의 xxx xxx xxx xxx에 관한 사항, 1차 보충답변 시 보고가 누락된 관계사 상품 및 용역 매입 실적 등에 대하여 질의함

○ 피신청인은 원질의 포함 총 세 차례 질의에 대하여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답변 중 일부는 논리적 완결성이 부족하거나 증빙과 서술이 불일치하였고, 일부는 보고 자체를 누락하는 등, 덤핑률 산정에 필수적인 자료가 완전한 형태로 제출되지 않았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❶ 관계사 조달 원재료 등의 가격 검증자료 누락 >

- **(조사실 질의)** 조사실은 원재료, 에너지 등 조사대상물품 생산을 위한 주요 투입요소에 관하여 질의하고,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투입요소가 있을 경우 그 구매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공급 관계사의 생산원가[43]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음

- **(피신청인 답변)** 피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의 주요 투입요소로서 xxx, xxx, xxx, xxx, xxx를 보고하고 구매처별 평균 구매단가 정보는 제출하였으나, 특정 공급 관계사에 대해서는 생산원가의 핵심요소인 제조원가 보고를 누락하였고, 다른 공급 관계사 xxx개사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와의 특수관계 자체를 부정하여 구매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방해하였음

42)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금융비용을 통칭함. 이하 동일

43) 생산원가(COP, Cost of Production) : 제조원가(또는 매입원가)에 판관비를 합산한 가격

· 구체적으로 원재료 및 에너지 비용 등 제조원가 구성항목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관계사 조달 원가 투입요소 관련 보고 오류 >

생산원가 과소보고 또는 미보고 내역

· 상기 도표의 ① 관련, 피신청인은 모든 답변항목에 있어 xxx를 관계사로 분류하기는 하였으나, 관계사 조달가격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생산원가 제출 시에는 xxx xxx xxx에 관한 사항만 보고하고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등 완전한 생산원가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44]

· ② 관련, 피신청인은 회사의 일반정보 부문(원질의서 Section B) 답변에서는 xxx을 관계사로 분류하였으나, 원재료 구매내역 등 제조원가 부문(원질의서 Section G) 답변에서는 xxx을 비관계사로 분류하고 생산원가 자료 일체를 미제출하였음[45]

· ③ 관련, 피신청인은 ② 사례와 동일하게 일반정보 부문에서는 xxx을 관계사로 분류한 반면, 제조원가 부문에서는 같은 회사를 비관계사로 분류하고 생산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46]

44)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 **(조사실 검토)** xxx과 xxx는 조사대상물품 제조공정의 핵심 투입요소로서[47], 피신청인이 제출한 통합 투입원가에서 두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xxx%[48]에 달함. 이러한 핵심요소를 관계사로부터 조달한 경우 그 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조사실은 그간 일관되게 원재료 공급 관계사의 생산원가 등을 검증해왔음

 · 상기 관련, 피신청인은 xxx 자회사인 xxx로부터 상당량의 xxx[49]을 공급받고도 해당 공급자의 xxx 제조원가를 "xxx"으로 축소 보고하였고, 지분·임원진을 공유한 또 다른 관계사인 xxx 및 xxx로부터 xxx와 xxx을 구매하고도 이들을 비관계사로 분류하고 생산원가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관계사 거래 검증을 어렵게 하였음

< ❷ 제조원가 산정의 비합리성 (반제품보다 낮은 완제품 제조원가) **>**

- **(조사실 질의)**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조사대상물품 제조원가가 적정 수준의 원재료 가격과 노무비, 제조경비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대상물품과 xxx xxx xxx xxx xxx[50]에 대한 제조원가명세서, 자재수불부, 제조원가 구성항목별 원가 배부표 등을 요구하였음

- **(피신청인 답변)** 피신청인은 조사실이 요구한 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반제품과 완제품 간 제조원가가 역전되는 현상을 보임

47) 조사대상물품의 원재료인 액체 수산화나트륨 제조원가를 포함한 통합 투입원가 기준이며,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수산화나트륨 제조공정을 화학식으로 풀어쓰면 다음과 같음

$2\,NaCl$(소금) + $2\,H_2O$(물) ═전기분해⟹ $2\,NaOH$(액체 수산화나트륨) + Cl_2(염소 기체) + H_2(수소 기체)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48)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 반제품 - 완제품 간 제조원가 역전 >

(단위 : RMB/톤)

최소 투입원가(이론상)와 실제 제조원가 비교 등[51], [52], [53]

- **(조사실 검토)** 반제품과 완제품 간 원가 역전 현상에 대하여 검토한바, 피신청인은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조사대상물품의 제조원가 집계에 있어서는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한 것으로 보임

 - 일례로,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4) 자료의 사용

○ 피신청인이 조사실 질의에 대한 답변서 및 보충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므로 조사실은 이를 사용하여 정상가격, 덤핑가격 및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예비덤핑률을 산정함

○ 다만, 제조원가의 경우 ▲피신청인이 제출한 금액이 xxx xxx xxx xxx xxx xxx 제조원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고, ▲xxx xxx xxx xxx xxx xxx 원가 또한 피신청인의 관계사 자료 미제출로 인해 xxx xxx xxx xxx xxx xxx xxx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었음

- 이에, 조사실은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 Ⅱ에 따라 중국의 화학 정보 제공기관인 OilChem[56]이 발표한 액체 수산화나트륨 내수 평균가격*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되, 제조원가 구성항목 중 원재료(액체 수산화나트륨) 투입액에 한하여 조정하고, 그 외 항목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였음

 * xxxRMB/LMT = 중국 xxx·xxx[57]의 xxx 액체 수산화나트륨 공장도 출하가격 평균 ('25년 일자별 공표가격 평균, 증치세 미포함)

○ 한편, WTO 반덤핑협정은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조사실은 상기 자료 외에도 합리적으로 사용 가능한 다른 자료가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함

- **(다른 독립된 출처의 정보)** 조사실은 공급국 현지시장동향 파악을 위해 코트라(KOTRA) 무역관을 활용 중이나, 코트라 조사자료로는 조사대상물품의 원재료인 액체 수산화나트륨의 가격정보까지는 파악할 수 없었음

- **(다른 이해당사자의 정보)** 피신청인은 본 건 조사에 참여한 유일한 조사대상공급자로, 조사과정에서 피신청인을 제외한 중국 내 다른 공급자의 제조원가 정보를 입수할 수 없었음

56) OilChem(隆衆資訊) : 1988년 설립된 중국석유화학상업정보망에 기원을 둔 중국의 대표적인 에너지·화학 분야 가격정보 기관(en.oilchem.net)으로, 석유, 천연가스, 정제유, 화학, 플라스틱, 고무, 화학섬유 등 약 400종의 에너지·화학 품목 가격정보를 수집·발표하고 있음.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가격모니터링센터, 상무부 등과 데이터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모회사는 상하이강롄(선전증권거래소 상장)임

57) 피신청인이 원재료 조달가격의 적정성 확인에 필요한 관계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관계로, 피신청인과 원재료 공급 관계사 소재지 일대(xxx, xxx)의 일자별 공표가격 평균치를 사용함

- 한편, OilChem 자료는 xxx 액체 수산화나트륨의 공장도 가격을 건조중량(DMT)과 수분포함중량(LMT)으로 나누어 권역별·일자별로 상세히 공표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사용한 원재료와 농도(xxx%)가 동일하여 별도 환산이 불요하고, ▲공장도 출하가격으로서 운송비 차감 등의 조정 또한 불요하며, ▲증치세를 차감하여 피신청인의 원가자료와 세금처리기준을 일치시킨 것인바, 정보의 정확성 측면에서도 활용이 용이함[58)59)]

5) 물품구분기준

○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 구성방법으로 ① 등급(정상품^{P}, 등외품^{N}), ② 농도(95% 이상 100% 미만^{095} 등), ③ 형태(플레이크^{FL}, 펄^{PL} 타입 등)를 제시함

* CCN 구성 예시 : 농도 98%의 플레이크 타입 고체 수산화나트륨 정상품 ☞ P095FL

○ 피신청인은 조사개시와 동시에 CCN 안내서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나,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사실은 이를 토대로 조사대상물품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함

6) 정상가격

가) 공급국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토

○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이하 "내수판매물품")의 판매가격(이하 "내수판매가격")이 통상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검증 및 원가미만 판매 여부 검증을 실시함

58) 이에, 신청인도 본 건 조사개시 요청 시 중국산 조사신청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증빙자료(구성가격 산정에 필요한 원재료 가격 증빙)로서 OilChem 공표 액체 수산화나트륨 내수가격 정보를 제시한 바 있음
참고로, 중국산 화학제품 조사에 있어 OilChem 자료는 제조원가 또는 정상가격 결정을 위한 신뢰성 있는 출처의 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조사 시 OilChem 자료가 활용된 사례로는 중국산 부틸아크릴레이트 원심(구제 23-2025-8호),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원심(구제 23-2024-6호) 등이 있음

59) 한편, 동 가격은 독립당사자 간 실제 거래가격으로서 이윤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협정 제2.2.1.1조는 조사대상공급자의 기록이 조사대상물품의 생산·판매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본 건은 반제품-완제품 간 원가 역전으로 동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관계사 거래로 인한 가격왜곡이 배제된 시장가격이 현 단계에서 확보 가능한 최선의 대체치이며, ▲피신청인이 당초 보고한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는 통상적 이윤 수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점을 종합 고려하였음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검증 (Arm's Length Test)

○ 피신청인이 관계사에 자가소비 용도로 판매한 내수판매물품이 있을 시, 비관계사 대상 판매단가와 비교하여 내수판매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검증함[60]

- 피신청인은 관계사인 xxx에 조사대상기간 동안 약 xxx톤의 조사대상물품(xxx)을 자가소비 용도로 판매한 바 있으나, 해당물품 판매단가가 비관계사 대상 동일모델 판매단가의 약 xxx%에 달하여 양 사 간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상가격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2) 원가미만 판매 여부 검증 (COP Below Test)

○ 피신청인과 공급국 내 비관계 수요자 간 최종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거래건별 판매단가와 생산원가(= 제조원가 + 판관비)를 상호 비교함[61]

- 이때 비교의 기준이 되는 생산원가 중 '제조원가'의 경우, '4) 자료의 사용'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OilChem 공표 xxx 액체 수산화나트륨 내수평균가격을 원재료 가격으로 적용하여 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아울러 '판관비'의 경우 피신청인 제출자료를 사용하되, 피신청인의 실제 판매조직 운영현황을 토대로 내수판매비를 조정[62]하고, 조사대상물품 판매와는 무관한 투자수익 등의 영업외 수익·비용은 제외하여 사용함

60)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중평균 판매가격이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중평균 판매가격의 98%~102%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내수판매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61) 원가미만 판매 여부 검증 방식에는 거래건별 ①순송장가격 비교 방식과 ②공장도가격 비교 방식이 있는데, 판매경로별로 인도조건(도착도, 상차도)이 상이한 피신청인의 내수거래 특성을 고려, 거래건별 순송장가격을 공장도가격으로 환산한 후, 운송비를 차감한 CCN별 생산원가와 비교하는 ② 방식을 채택함

62) 피신청인 중 xxx는 별도 판매조직을 설치하지 않고, xxx가 양 사의 조사대상물품 판매업무를 통합 수행한바(피신청인 제2차 보충답변서 중 1번질의 답변), xxx의 판매비용 원장에서 조사대상물품 내수판매와 관련된 비용들을 집계하여 xxx+xxx의 조사대상물품 내수판매비로 반영함

○ 거래건별 검증내역을 CCN별로 종합한 결과, 원가미만 판매물량이 총 내수판매물량의 20% 미만인 CCN의 경우에는 내수판매자료 일체를, 원가미만 판매비율이 20% 이상인 CCN에 대해서는 원가미만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내수판매자료만을 정상가격 산정 기준으로 함

- 한편, 모든 내수판매물품이 원가미만으로 판매된 CCN에 대해서는 내수판매자료를 모두 배척하고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 이하 'CV')을 산정[63]함이 원칙이나,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CCN이 덤핑차액 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64] 구성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없었음

(단위 : 톤)

내수판매 CCN	내수판매물량 (A)	원가미만판매물량 (B)	원가미만판매비율 (C=B/A*100)	내수판매자료 사용 여부

나)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 (Viability Test)

○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증을 통과한 피신청인의 내수판매물량이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함[65]

- 먼저,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증을 통과한 피신청인의 총 내수판매물량은 총 대한국 수출물량의 xxx%(약 xxx배)로, 전체물량 측면에서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함

63) 구성가격은 한국수출모델(CCN) 제조원가에 공급국 내수판매와 관련된 판관비 및 적정이윤을 가산한 것으로, 이어지는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까지 실시한 결과, 한국수출모델이 공급국 내수시장에서는 전량 원가미만으로 판매되었거나, 원가이상으로 판매된 물량이 대한국 수출물량의 5% 미만인 경우, 해당모델(CCN)에 대해서는 실제 내수판매가격이 아닌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함

64) 피신청인의 경우 xxx개 CCN을 전량 원가미만 가격에 내수판매하였으나, xxx개 CCN 모두 대한국 수출실적이 없는 모델로서 덤핑차액 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65) ①통상거래가격 여부 검증을 통과한 총 내수판매물량이 총 대한국 수출물량 대비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②개별 모델(CCN)별로도 대한국 수출모델(CCN)과 동일한 내수판매모델(CCN)이 있는지, 그 물량은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함. 내수/한국수출 물량비가 5% 이상인 경우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에 미달한 CCN에 대해서는 구성가격(CV)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함

- 다음으로, 대한국 수출모델(총 xxx개 CCN)별로 물량의 충분성을 검토한 결과, xxx개 모델 모두 통상의 거래로 인정된 내수판매물량이 대한국 수출물량의 5%를 초과한바, 개별모델 측면에서도 피신청인의 내수판매 자료를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됨

(단위 : 톤)

대한국 수출 CCN	대한국 수출물량 (A)	통상의 내수판매물량 (B)	물량 비율 (C=B/A×100)	물량의 충분성 검증 통과 여부

다) 정상가격의 조정

○ 정상가격에서 내륙운임, 신용비용 및 포장비용을 조정함

- **(내륙운임)** 피신청인은 관계사인 xxx[66]과 운송 계약을 맺고, xxx에 운송중개 수수료 5%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과 xxx간 계약서에 수수료 요율 관련 조항이 부재하고, 실제 운임명세 상으로도 xxx이 비관계 운송회사에 지급한 비용과 xxx이 피신청인에게 청구한 금액 간 일정한 경향성이 확인되지 않았음. 이에, 피신청인이 xxx에게 지급한 수수료 명목의 금액은 제외하고, xxx이 비관계 운송회사에 지급한 비용만을 공제함[67]

- **(신용비용)** 피신청인은 거래처별 매출채권 회수기간[68]을 신용기간으로 보고(3개사 평균 xxx일)하였으나, 그 근거자료인 매출채권 보조원장 검증[69] 결과, 표본거래 전부가 선수금 수취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70]함.

66) xxx xxx xxx xxx로, xxx이 직접 운송업무를 수행하지는 않고 비관계 운송회사에 화물 운송업무 등을 외주한 후, 운송실비(비관계 운송회사 청구액)에 수수료를 더하여 피신청인에게 청구함

67) 아울러, 대한국 수출판매 관련 내륙운임, 해상운임 등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비관계 운송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조정요소로 반영한 점을 고려함

68) 조사실은 조사대상공급자의 내수 또는 수출 거래 건이 매우 많고, 1개 거래의 판매대금을 분할하여 회수하는 등, 거래건별 신용기간(대금회수일 - 출하일(또는 판매일))을 일일이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거래처별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신용기간으로 보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69) 내수거래처 xxx사(총내수판매물량의 xxx%)에 대한 매출채권 보조원장 검증

70) 내수판매 샘플의 주문서 또는 계약서 상에도 지급조건이 T/T in advance 또는 T/T Prepayment로 기재되어 있어, 조사대상물품이 선수금 수취 방식으로 판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에 매출채권 보조원장을 기준으로 선수금 회전일수 평균값을 계산(빈화그룹 xxx일, 동루이 xxx일, 하이웨 xxx일)하여 이를 신용기간으로 적용함

* 신용비용 = 신용기간(매출채권 등 평균회전일수) × 매출액 ÷ 365일 × 단기차입금 이자율

- **(포장비용)** 피신청인은 내수·수출물품 모두 포장타입에 따라 제품코드를 부여하고 동 코드별로 포장자재비 투입량 및 금액을 추적·관리하였음을 확인하고, 보고된 금액을 조정함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 RMB/톤)

대한국 수출 CCN	정상가격 (A)	조정요소 (B)			조정된 정상가격 (C=A-B)
		내륙운임	신용비용	포장비용	

7) 덤핑가격

가) 덤핑가격의 적용

○ 피신청인은 한국의 수입자 또는 수요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대한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함

나) 덤핑가격의 조정

○ 덤핑가격에서 내륙운임, 핸들링비용, 해상운임 및 보험료, 은행수수료, 신용비용, 포장비용, 증치세 미환급액을 조정함

- **(내륙운임, 핸들링비용, 해상운임 및 보험료)** 비관계사인 물류회사 및 보험사와의 계약서와 비용지급 증빙을 확인하고 보고된 금액을 조정함

- **(은행수수료)** 실제 수수료 발생액을 보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조정함

- **(신용비용)** 피신청인은 대한국 수출물품의 신용기간[71]을 거래건별로 추적·보고하였으나, 내수물품과 동일조건에서의 비교를 위하여 출하일이 아닌 판매일(송장 발행일)을 신용기간 산정기준일로 변경하여 이를 조정함

71) 피신청인이 보고한 대한국 수출물품 신용기간 = 대금회수일(선수금 입금일) - 출하일(선하증권 발행일)

- **(포장비용)** 내수물품과 동일하게 세부 수출모델별로 포장자재비 투입 물량 및 금액을 추적·관리하였음을 확인하고 보고금액을 조정함

- **(증치세 미환급액)** 조사대상물품은 수출 시 매입증치세가 전액 미환급되는 품목[72]으로, 대한국 수출 거래건별로 증치세 미환급액이 누락 없이 보고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조정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 RMB/톤)

대한국 수출 CCN	덤핑가격 (A)	조정요소 (B)					조정된 덤핑가격 (C=A-B)
		내륙운임, 핸들링비용,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은행수수료	신용비용	포장비용	증치세 미환급액	

8) 과세가격

○ 피신청인이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함

9) 예비덤핑률

○ 피신청인에 대하여 산정된 예비덤핑률은 **3.66%**임

(단위 : 톤, RMB/톤)

대한국 수출 CCN	대한국 수출물량	조정된 정상가격 (A)	조정된 덤핑가격 (B)	덤핑 차액 (C=A-B)	과세 가격 (D)	덤핑률 (E=C/D ×100)	가중평균 덤핑률 (F=E× 수출비중)
예비덤핑률							**3.66%**[73]

72) 중국은 원칙적으로는 수출재화에 대한 매입증치세를 전액 환급하되, 산업 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출 제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률을 차등 조정하고 있음. 조사대상물품은 이러한 수출제한 품목 중 하나로, 수출가격의 13%만큼 매입증치세가 미환급되며, 해당 금액만큼 실질적인 수출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함

* 증치세 미환급액 = 수출가격(생산자인 수출자의 FOB 수출가격 또는 무역상인 수출자의 매입가격) × [증치세 부과기준율(13%) - 수출 환급률(0%)]

73) 가중평균 덤핑률은 반올림 전 실제 수치로 산정한 결과이며(각주 52 참조), 표에 표시된 CCN별 가중평균 덤핑률의 단순 합계와는 단수 차이가 있음

나. 스카이 임펙스 (Skyey Impex Limited) : 미대응 공급자(무역상)

○ 스카이 임펙스(이하 이 목에서 "피신청인"이라 함)는 본 건 개시 당시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

1) 답변서 제출 현황 및 조사 경과 ('26년)

○ 4. 7. :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74]

○ 4. 28. :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기한 (미제출)

○ 5. 6. :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및 CCN 관련 의견수렴 기한 (별도의견 없음)

○ 5. 18. : 덤핑부문 답변서 제출기한 (미제출)

○ 7. 29. ~ 8. 5. : 예비덤핑률 산정내역 통보 및 의견수렴 (별도의견 없음)

2) 자료의 사용

○ 피신청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실은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중국 시장조사기관의 자료, 신청인 자료,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등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예비덤핑률을 산정함[75]

3) 정상가격 및 조정요소

○ **(정상가격)** 피신청인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공급국 내수판매가격 및 원가자료를 입수할 수 없었는바, 조사실은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구성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정상가격으로 적용함

74)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1.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질의서 송부 시 합리적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조사가 이루어져 피신청인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릴 수 있음을 통지한 바 있음

75) 피신청인은 무역상인 수출자로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중국산 조사대상물품을 한국으로 상당량(중국산 총 수입물량의 xxx%) 수출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조사에 참여하지 아니함. 조사실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가 무역상임이 확인되고, 해당 무역상이 취급한 물품의 원생산자가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선정된 무역상과는 별개로 원생산자가 자발대응 신청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 무역상의 덤핑률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자발대응 생산자의 덤핑률을 적용하나, 무역상과 생산자 모두 조사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무역상에 별도 덤핑률을 산정함(예: 중국산 합판 원심)

- **(원재료비)** OilChem이 중국 각 권역별로 공표한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액체 수산화나트륨 출하가격 평균액(전국 평균)을 적용함

- **(노무비 및 제조경비)** 신청인의 농축공정 원가를 기반으로 노무비와 기타 경비는 양국 간 제조업 평균임금 및 1인당 구매력 GDP 차이[76]를, 연료비와 전력비는 LNG 가격과 산업용 전력비 차이[77]를 반영, 조정함

- **(판관비)** 중국 내 알려진 생산자 3개사의 손익계산서[78]를 토대로 원가 대비 판관비 비율을 계산하고, 여기에 무역상인 xxx[79]의 판관비 비율을 가산하여 피신청인 취급 상품에 대한 공급국 내수시장에서의 총판관비[80]를 계산하되, 공장도 가격에 준하는 순(純)구성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운임 등의 판매비 항목은 제외함

- **(이윤)** 무역상 단계 이윤은 xxx의 매출원가 및 영업이익 자료를, 생산자 단계 이윤은 중국 내 알려진 생산자 3개사의 손익계산서를 토대로 각각 산정하여 합산 적용함

○ **(조정요소)** 상기 방식에 따라 산정된 정상가격은 운임 등의 판매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純)구성가격으로서, 추가적인 조정요소 공제는 불요함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 USD[81]/톤)

제조원가 (A=a+b+c)			판관비 (B)	이윤 (C)	순구성가격 (D=A+B+C)
원재료비(a)	노무비(b)	제조경비(c)			

76) 중국/한국 비율 = (노무비) 36.3%, (1인당 구매력 GDP) 43.7%, 출처 : Trading Economics. 2008년 설립된 글로벌 경제 데이터 플랫폼으로, 196개 국가·관세영역에 대한 거시경제·금융지표 데이터 및 전망치 제공

77) 중국/한국 비율 = (LNG) 76.6%, (전력비) 85.0%, 출처 : Global Petrol Prices. 2011년 설립된 글로벌 에너지 가격정보 전문기관으로, 150여개 국가·관세영역에 대한 자동차 연료, 전기요금 및 천연가스 가격정보 제공

78) 조사신청서에 명시된 중국의 알려진 생산자인 xxx, xxx, xxx의 2025년도 결산 기준 손익계산서 공개본

79) xxx: 본 건 조사에 유일하게 협조한 조사대상물품 내수·수출 판매 전문 무역상 (xxx xxx xxx xxx xxx)

80) 알려지지 않은 공급국 내 원생산자의 판관비 + 무역상인 피신청인의 판관비

81) 관세청 수입통관자료(USD 또는 KRW), 신청인 노무비 및 제조경비(KRW), 원재료비(RMB 또는 USD), 판관비 및 이윤(RMB 또는 USD)의 단위가 서로 달라 환산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USD" 단위로 통일하여 계산함. 이하 다른 조사 미대응 공급자 및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단위 기준 적용

4) 덤핑가격 및 조정요소

○ **(덤핑가격)**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상 조사대상기간('25.1.1.~12.31.) 동안의 피신청인 물품 수입단가(CIF 가격)를 적용함

○ **(조정요소)** 본 건 조사에 대응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동루이 및 그 관계사의 자료 중, 피신청인 물품과 동일한 모델에 대한 수출단가 대비 조정요소 비율을 계산하여 적용한 금액을 공제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 USD/톤)

조정 전 덤핑가격 (A)	조정요소 계 (B)	조정된 덤핑가격 (C=A-B)

5) 과세가격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는 CIF 기준 가격 정보로서, 이를 피신청인의 과세가격에도 동일 적용함

6) 예비덤핑률

○ 피신청인에 대하여 산정된 예비덤핑률은 **22.21%**임

(단위 : USD/톤)

조정된 정상가격 (A)	조정된 덤핑가격 (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덤핑률 (E=C/D×100)
				22.21%

다. 유니라이온 (Tianjin Unilion Supply Chain Co., Ltd.) : 미대응 공급자(무역상)

○ 유니라이온(이하 이 목에서 "피신청인"이라 함)은 본 건 개시 당시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

1) 답변서 제출 현황 및 조사 경과 ('26년)

○ 4. 7. :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

○ 4. 28. :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기한 (미제출)

○ 5. 6. :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및 CCN 관련 의견수렴 기한 (별도의견 없음)

○ 5. 18. : 덤핑부문 답변서 제출기한 (미제출)

○ 7. 29. ~ 8. 5. : 예비덤핑률 산정내역 통보 및 의견수렴 (별도의견 없음)

2) 자료의 사용

○ 피신청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실은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중국 시장조사기관의 자료, 신청인 자료,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등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예비덤핑률을 산정함[82]

3) 정상가격 및 조정요소

○ 피신청인과 동일한 유통구조를 지닌 스카이 임펙스(무역상)와 동일한 기준으로 순(純)구성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조정된 정상가격으로 적용함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 USD/톤)

제조원가 (A=a+b+c)			판관비 (B)	이윤 (C)	순구성가격 (D=A+B+C)
원재료비(a)	노무비(b)	제조경비(c)			

82) 피신청인 또한 무역상인 수출자로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중국산 조사대상물품을 한국으로 상당량(중국산 총 수입물량의 xxx%) 수출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함. 이하 무역상인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도 덤핑률을 산정,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각주 75 참조

4) 덤핑가격 및 조정요소

○ **(덤핑가격)**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상 조사대상기간('25.1.1.~12.31.) 동안의 피신청인 물품 수입단가(CIF 가격)를 적용함

○ **(조정요소)** 동루이 및 그 관계사의 자료 중 피신청인 물품과 동일한 모델의 수출단가 대비 조정요소 비율을 계산하여 적용한 금액을 공제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 USD/톤)

조정 전 덤핑가격 (A)	조정요소 계 (B)	조정된 덤핑가격 (C=A-B)

5) 과세가격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는 CIF 기준 가격 정보로서, 이를 피신청인의 과세가격에도 동일 적용함

6) 예비덤핑률

○ 피신청인에 대하여 산정된 예비덤핑률은 **19.93%**임

(단위 : USD/톤)

조정된 정상가격 (A)	조정된 덤핑가격 (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덤핑률 (E=C/D×100)
				19.93%

라. 그 밖의 공급자

1) 자료의 사용

○ WTO 반덤핑협정 제9.4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의하면,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률 산정 시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산정한 덤핑률은 가중평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건의 경우 모든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83]한 관계로 가중평균 대상 덤핑률이 존재하지 않는바, 합리적 대안으로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신청인 자료, 조사에 협조한 공급자의 자료 등을 활용하여 그 밖의 공급자에 적용할 덤핑률을 별도로 산정함[84]

2) 정상가격 및 조정요소

○ **(정상가격)** ▲OilChem 발표 원재료 가격에 ▲신청인의 농축공정 원가를 기반으로 양국 간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한 노무비와 제조경비, ▲중국 내 알려진 생산자 3개사의 평균 판관비(운임 제외),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 '25년도 화학제조업 평균 이윤을 가산하여 순구성가격[85]을 산정함

83) 중국의 조사대상공급자 3개사 중 2개사(스카이 임펙스, 유니라이온 : 조사 미대응)에 대해서는 전면 이용가능한 자료를, 나머지 1개사(동루이 및 그 관계사 : 조사 대응)에 대해서는 제조원가 핵심항목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덤핑률을 산정함

84) WTO 반덤핑협정 등은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 산정 시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공급자의 덤핑률은 가중평균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공급자에게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사당국의 재량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임

이에, 조사실은 가중평균 대상 덤핑률이 부재한 경우 ▲다른 가용한 자료를 사용하여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새로 산정하거나(통상 원심), ▲기존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하는 등(통상 종료재심) 조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참고로, 미국은 개별 조사대상공급자의 덤핑률이 모두 0 또는 미소마진(2% 미만)이거나 전면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결정된 경우,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 공급자의 덤핑률을 가중평균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토록 규정 (협정공백에 대응하여 자체법제화)

> 미국 1930년 관세법 제735조(c)(5)(B) [19 U.S.C. §1673d(c)(5)(B)] : 국문 요지
> 개별조사된 모든 수출자·생산자의 덤핑마진이 "0" 또는 최소허용수준이거나 전적으로 제776조(이용가능한 자료)에 따라 산정된 경우, 조사당국은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률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조사 결과의 평균을 포함한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 (원문) EXCEPTION.—If the estimated weighted average dumping margins … may use any reasonable method …

85)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서 확인된 중국의 그 밖의 공급자는 약 xxx개사로 생산자인 수출자와 전문무역상이 혼재되어 있어 거래단계의 차이로 인한 판매가격 및 비용상 왜곡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조사실은 생산자로 확인된 수출자(xxx개사)의 수입단가를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가격으로 적용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상가격 또한 공급국 내 생산자의 비용과 이윤 정보만을 토대로 순구성가격을 산정·적용함

○ **(조정요소)** 상기 방식에 따라 산정된 정상가격은 공장도 가격에 준하는 순(純) 구성가격으로서, 내륙운임 등의 추가적인 조정요소 공제는 불요함

○ 한편, 조사실은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자료로서 코트라(KOTRA)가 조사한 공급국 내수시장자료를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이는 조사대상기간('25.1.1.~12.31.) 동안의 내수판매가격을 평균한 것이 아닌 특정 시점의 공표된 가격정보로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원재료 가격 변동 폭이 상당하였던 점[86]을 감안할 때 대체 정보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 USD/톤)

제조원가 (A=a+b+c)			판관비 (B)	이윤 (C)	순구성가격 (D=A+B+C)
원재료비(a)	노무비(b)	제조경비(c)			

3) 덤핑가격 및 조정요소

○ **(덤핑가격)**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서 조사대상공급자 3개사를 제외하고 생산자인 수출자로 파악되는 xxx개사의 조사대상기간('25.1.1.~12.31.) 동안의 평균 수입단가(CIF 가격)를 적용함

○ **(조정요소)** 본 건 조사에 대응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동루이 및 그 관계사의 자료 중, 그 밖의 공급자 수출상품과 동일한 모델에 대한 수출단가 대비 조정요소 비율을 계산하여 적용한 금액을 공제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 USD/톤)

조정 전 덤핑가격 (A)	조정요소 계 (B)	조정된 덤핑가격 (C=A-B)

86) xxx 액체 수산화나트륨 중국전역 평균출하가격(USD/DMT) : 최저 xxx('25.12월), 최고 xxx('25.2월)

4) 과세가격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는 CIF 기준 가격 정보로서, 이를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과세가격으로도 동일 적용함

5) 예비덤핑률

○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하여 별도로 산정된 예비덤핑률은 **17.58%**임

(단위 : USD/톤)

조정된 정상가격 (A)	조정된 덤핑가격 (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덤핑률 (E=C/D×100)
				17.58%

< 대 만 >

가. 포모사 (Formosa Plastics Corporation) : 미대응 공급자(생산자)

○ 포모사(이하 이 목에서 "피신청인"이라 함)는 본 건 개시 당시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

1) 답변서 제출 현황 및 조사 경과 ('26년)

○ 4. 7. :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87]

○ 4. 28. :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기한 (미제출)

○ 5. 6. :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및 CCN 관련 의견수렴 기한 (별도의견 없음)

○ 5. 18. : 덤핑부문 답변서 제출기한 (미제출)

○ 7. 29. ~ 8. 5. : 예비덤핑률 산정내역 통보 및 의견수렴 (별도의견 없음)

2) 자료의 사용

○ 피신청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실은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의 자료, 피신청인 공시 재무제표, 신청인 제조원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등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예비덤핑률을 산정함

3) 정상가격 및 조정요소

○ **(정상가격)** 피신청인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공급국 내수판매가격 및 원가자료를 입수할 수 없었으므로 조사실은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구성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정상가격으로 적용함

87)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1.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질의서 송부 시 합리적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조사가 이루어져 피신청인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릴 수 있음을 통지한 바 있음

- **(원재료비)** 화학 정보제공기관인 Chemical Market Analytics[88]가 공표한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액체 수산화나트륨 대만 내수가격 평균액을 적용함

- **(노무비 및 제조경비)** 신청인의 농축공정 원가를 기반으로 노무비와 기타 경비는 한국-대만 간 제조업 평균임금 및 1인당 GDP 차이[89]를, 연료비와 전력비는 LNG 가격과 산업용 전력비 차이[90]를 반영하여 조정함

- **(판관비)**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대만증권거래소(TWSE) 상장기업으로서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공시한 '25년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원가 대비 판관비 비율을 산정함

- **(이윤)** 피신청인의 재무제표를 이용하되, 피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적자 운영된 관계로 내수판매물품이 원가 이상에 판매되었는지 여부 및 해당 거래에서의 이윤율을 산출하기 어려워, 대만 내 다른 종합화학회사인 xxx[91]의 공개된 재무제표를 추가 활용하여 양 사의 가중평균 이윤율을 산정·적용함[92]

○ **(조정요소)** 내수판매 시 내륙운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B to B 거래품목 특성상 대만 내 운임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워 정상가격 조정요소로 적용하지 않고,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덤핑가격 조정요소에도 반영하지 아니함

88) Chemical Market Analytics(CMA) : 1979년 최초 설립된 글로벌 화학시장 분석기관으로, 30여 개 국가 및 관세영역의 기초화학제품 200여 종에 대한 수급·가격·마진 및 교역 데이터 제공

89) 대만/한국 비율 = (노무비) 61.2%, (1인당 GDP) 105.4%
출처 : Trading Economics 및 대만 공식통계 포털(eng.stat.gov.tw)

90) 대만/한국 비율 = (LNG) 67.2%, (전력비) 161.7%, 출처 : Global Petrol Prices

91) 대만의 대표적인 석유화학·플라스틱 원료 제조기업으로, 성격상 석유화학제품 생산비중이 높으나, 반도체용 세정제 및 도금액 등 무기화학제품(과산화수소, 황산 등)도 생산함

92) WTO 반덤핑협정 제2.2.2조는 이윤 등은 조사대상공급자의 실제 자료에 기초하여 산정하되, 이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 본 건은 다음 중 (iii) 방식 적용

(ⅰ) 당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국(또는 관세영역)의 국내시장에서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 금액,

(ⅱ) 조사대상인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국(또는 관세영역)의 국내시장에서 동종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 금액의 가중평균,

(ⅲ)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 단, 이러한 방법으로 확정된 이윤액은 원산지국(또는 관세영역)의 국내시장에서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실현된 이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 USD/톤)

제조원가 (A=a+b+c)			판관비 (B)	이윤 (C)	구성가격 (D=A+B+C)
원재료비(a)	노무비(b)	제조경비(c)			
93)					94)

4) 덤핑가격 및 조정요소

○ **(덤핑가격)**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상 조사대상기간('25.1.1.~12.31.) 동안의 피신청인 물품 수입단가(CIF 가격)를 적용함

○ **(조정요소)** 본 건 신청 당시 신청인이 제출한 대만(xxx항)~한국(xxx항) 간 해상운송 및 수출부대비용 견적서를 이용하여 이를 공제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 USD/톤)

조정 전 덤핑가격 (A)	해상운송비 및 수출부대비용 (B)	조정된 덤핑가격 (C=A-B)

5) 과세가격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는 CIF 기준 가격 정보로서, 이를 피신청인의 과세가격으로 동일 적용함

6) 예비덤핑률

○ 피신청인에 대하여 산정된 예비덤핑률은 **38.89%**임

(단위 : USD/톤)

조정된 정상가격 (A)	조정된 덤핑가격 (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덤핑률 (E=C/D×100)
				38.89%

93) 신청인의 원재료와 동일한 xxx% 액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조사대상기간 대만 내수 출하가격 평균값

94) 한편, 다른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인 코트라(KOTRA)의 대만 내수시장 조사자료는 조사대상기간 전체를 대표하는 값이 아닌 등의 이유로 정상가격 산정 근거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본 보고서 Ⅱ. 3. <대만> 나. 그 밖의 공급자 부문 참조), 조사실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산정한 구성가격(xxxUSD/톤)은 코트라가 조사한 대만 내 도매가격 최저값인 xxxUSD/톤(코트라 원자료 기준 xxxTWD/kg)을 하회하여, 조사실이 산정한 구성가격이 다른 출처로부터의 자료와 비교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나. 그 밖의 공급자

○ WTO 반덤핑협정 제9.4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의하면,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률 산정 시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산정한 덤핑률은 가중평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건의 경우 유일한 조사대상공급자인 포모사가 조사에 미대응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함에 따라 가중평균 대상 덤핑률이 존재하지 아니함

○ 이에 따라 조사실은 신뢰할 수 있는 행정기관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별도의 덤핑률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아니함

- **(정상가격)** 조사실은 코트라(KOTRA)로부터 대만 내수시장 조사자료를 입수하였으나, 이는 '25년 중 일부 기간의 가격 분포 정보[95]에 불과하여 조사대상기간 전체의 대만 내수가격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자 명칭, 유형(생산자·무역상 등) 및 소재지 정보 또한 파악할 수 없어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 기준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

- **(덤핑가격 및 덤핑차액)**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통해 그 밖의 공급자 물품의 수입단가 확인은 가능하나, 각 사(총 xxx개사) 상품의 형태와 단가가 상이한 상황에서[96] 이에 상응하는 형태별 내수가격 정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만으로는 덤핑차액 산정이 불가능함

 * 아울러 xxx xxx xxx xxx xxx, 각 사 취급상품이 포모사 제품일 가능성 또한 상존

○ 이와 같이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 산정에 필요한 핵심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조사실은 기타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대만산 수입의 xxx%를 차지하는 포모사의 예비덤핑률(38.89%)을 그 밖의 공급자에게 동일 적용함

95) 코트라 자료 예시: '25년 xxx월~xxx월 최저 xxx~ 최고 xxxTWD/kg(약 xxx~xxxUSD/톤) 등 (모두 xxx 형태)

96) ▲xxx(xxx, 재무제표 입수불가) : xxx 형태, 수입량 xxx톤, 수입단가 xxxUSD/톤,
▲xxx(xxx, 재무제표 입수불가) : xxx 형태, 수입량 xxx톤, 수입단가 xxxUSD/톤 등

참고로 본 건 개시 당시 조사실은 포모사를 대만측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공고하면서, 기타 공급자에 대해서도 조사참여를 통한 개별 덤핑률 산정요청 기회가 부여됨을 안내(대만 당국 앞 서한 발송, 관보 게재,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하였으나, xxx개사 중 어느 기업도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4. 덤핑사실 예비조사 결과 종합

< 주요 검토사항 >

○ 공급자별 덤핑차액이 최소허용수준(*de minimis*, 2%) 이상인지 여부를 검토함

관련 법규

○ 관세법 제51조

… 외국 물품이 덤핑되어 실질적 피해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덤핑차액(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① 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3. 덤핑차액의 정도 (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 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

1. 덤핑차액 : **덤핑가격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 WTO 반덤핑협정 제5.8조 중

덤핑마진이 최소허용수준이거나, 또는 실재적·잠재적인 덤핑수입량이나 피해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조사는 즉각적으로 종결된다. **수출가격 대비 백분율로 표시된 덤핑마진이 2% 미만**인 경우 이러한 덤핑마진은 **최소허용수준*(de minimis)***인 것으로 간주된다. (후략)

○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중

당국은 원칙적으로 조사대상물품의 알려진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결정한다. (후략)

○ 덤핑사실 예비조사 결과, 각 공급국 또는 관세영역의 조사대상공급자별 예비덤핑률은 3.66%~38.89%,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예비덤핑률은 중국 17.58%, 대만 38.89%로 각각 산정되었으며, 이는 WTO 반덤핑협정과 관세법령에서 정한 최소허용수준(2%)을 상회하는바[97],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요건 중 하나인 **덤핑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공급국 / 관세영역	공급자 (수출자, 생산자)	예 비 덤핑률	대 응 여 부
중 국	동루이 (Shandong Befar Group Dongrui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인 다음의 기업 - 빈화그룹 (Befar Group Co., Ltd.) - 하이웨 (Binhua Haiyue (Qingdao) Trading Co., Ltd.)	**3.66%**	대 응
	스카이 임펙스 (Skyey Impex Limited)	**22.21%**	미대응
	유니라이온 (Tianjin Unilion Supply Chain Co., Ltd.)	**19.93%**	미대응
	그 밖의 공급자	**17.58%**	–
대 만	포모사 (Formosa Plastics Corporation)	**38.89%**	미대응
	그 밖의 공급자	**38.89%**	–

* '그 밖의 공급자'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25.1.1.~12.31.) 동안 조사대상물품을 수출한 실적이 없는 해당 공급국 또는 관세영역의 신규공급자를 말함

97)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덤핑률은 과세가격 대비로, 최소허용수준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마진율은 덤핑가격 대비로 각각 산정하였으며, 둘 중 어느 기준에 의하더라도 최소허용수준(2%)을 상회함

구체적으로, **동루이**의 경우 실제 수출가격(xxx, xxx, xxx 등으로 다양)을 분모로 하는 **최소허용수준 검토용 마진율**은 CIF 환산가격을 분모로 하는 **예비덤핑률을 소폭 상회하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아니함**

*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는 모두 3.66%로 표기되며, 셋째 자리에서 3.66x%(덤핑가격 대비), 3.66x%(과세가격 대비)로 구분됨

그 외 조사에 대응하지 아니한 공급자(중국 2개사, 대만 1개사)와 중국·대만의 그 밖의 공급자의 경우,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상의 수입단가(CIF 가격)를 덤핑가격과 과세가격에 동일 적용하였으므로, 공급자별 예비덤핑률과 최소허용수준 검토용 마진율이 동일함

< 참고 > 반덤핑협정은 개별 공급자에 대한 조치제외 여부를 결정짓는 **최소허용마진**(덤핑차액이 "**수출가격(관세법상 덤핑가격)**"의 2%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덤핑방지관세의 구체적 부과방식(정률세, 기준수입가격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다만, 협정 제9.3조는 부과세액이 덤핑차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 규정). 반면 **관세법령**은 협정상 규정에 더하여 관세 부과에 필요한 **덤핑률 산정방식**(덤핑차액을 "**과세가격(CIF 가격)**"으로 나눈 비율)까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치제외 여부 판단기준(분모: 덤핑가격)과 부과세율 산정기준(덤핑률, 분모: 과세가격)이 상이함**을 참고. 다만, 덤핑률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되는 부과세액은 결국 덤핑차액과 일치하므로, 협정 제9.3조상의 과세상한을 초과하지 아니함

※ 관련규정: (최소허용마진) 협정 제5.8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 (덤핑률)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Ⅲ. 국내산업의 피해

1. 국내산업 발전(확립)의 실질적 지연 여부

< 주요 검토사항 >

○ 국내산업이 발전(확립)중인 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발전중인 산업이라고 인정되면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함

○ 국내산업의 발전의 실질적 지연 여부는 사업계획 및 산업여건상 기대경영성과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대경영성과와 실제경영성과를 비교하여 검토함

관련 법규

○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Ⅳ.5 (국내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에 대한 판단 근거)

- 국내산업의 확립의 실질적 지연 여부에 관한 조사·판정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함
- 국내생산자가 상업적 생산을 개시한 경우에는 산업의 안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확립과정에 있는 산업으로 보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당해 산업의 실질적 지연 여부는 다음 사항을 근거로 판단함

·사업계획 또는 산업여건상 기대경영성과의 타당성

·기대경영성과와 실제경영성과의 비교

- 국내산업의 안정성 여부는 국내생산물품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여 생산의 기간·생산의 성격·국내 생산규모 등을 고려한 생산설비의 안정적 가동 여부, 합리적인 손익분기점 도달 여부, 국내시장에서의 안정적 지위 확보 여부 등에 근거하여야 함

○ 국내 고체 수산화나트륨 산업은 1960년대 후반부터 형성되기 시작[98] 했으며, 신청인인 영진의 생산량은 '24년 기준 동종물품 국내 총생산량의 xxx%를 차지하므로 국내산업은 이미 확립된 산업임

○ 따라서 본 조사에서 국내산업 발전(확립)의 지연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해당 없음

98) 영진의 전신인 영진화학공업사는 1969년에 설립되어 고체 수산화나트륨을 생산하였고, 1978년 영진화학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10년 영진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음

2.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

관련 법규

○ WTO반덤핑협정 3.1조

1994년도 GATT 제6조의 목적상,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며, (1) 덤핑수입물량 및 덤핑 수입품이 동종 상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2) 동 수입품이 이러한 상품의 국내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한다.

* 이 협정에서 "피해"라는 용어는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또는 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해석된다.

○ WTO반덤핑협정 3.2조

덤핑수입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은 절대적으로 또는 수입회원국의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덤핑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덤핑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조사당국은 수입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수입품의 저가판매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품의 영향이 달리 상당한 정도로 가격하락을 초래하는지 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였을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러한 요소중 하나 또는 여러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 WTO반덤핑협정 3.4조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율, 또는 설비가동율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위에 열거된 요소는 총망라적이 아니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3. 덤핑차액의 정도(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4.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
5.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가. 산업피해 분석 대상 국내생산자

○ 본 보고서의 국내산업 범위 검토 결과에 따라 영진의 동종물품 생산사업을 대상으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를 조사함

나.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 주요 검토사항 >

○ 덤핑수입물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였는지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함

관련 법규

○ 관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 WTO반덤핑협정 3.2조 중

덤핑수입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은 절대적으로 또는 수입회원국의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덤핑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1) 덤핑물품 수입물량의 절대적 증가 여부

○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22년 xxx톤에서 '23년 xxx톤으로 32.2% 증가, '24년 xxx톤으로 21.9% 증가, '25년 xxx톤으로 12.0%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2.3% 증가하였음

< 덤핑물품 수입 현황 >

(단위 : 톤, %)

구분 \ 연도		'22년	'23년	증감률	'24년	증감률	'25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덤핑물품 수입	물량	*1,000*	*1,322*	32.2	*1,612*	21.9	*1,418*	-12.0	12.3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2) 덤핑물품 수입물량의 상대적 증가 여부

○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소비가 연평균 3.6% 감소한 상황에서,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는 연평균 13.9% 감소하였으나, 덤핑물품 수입물량은 연평균 12.3% 증가하였음

○ 덤핑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22년 xxx%, '23년 xxx%, '24년 xxx%, '25년 xxx%로 지속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16.7%p 상승하였음

- 국내 동종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22년 xxx%, '23년 xxx%, '24년 xxx%, '25년 xxx%로 지속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20.1%p 하락하였음

- 기타국산 수입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2년 xxx%, '23년 xxx%, '24년 xxx%, '25년 xxx%로 지속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3.4%p 상승하였음

< 국내소비 및 시장점유율 현황 >

(단위 : 톤, %)

구분 \ 연도		'22년	'23년	증감률	'24년	증감률	'25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99]
판매물량	국내소비 (a=b+e)	*1,000*	*953*	-4.7	*1,044*	9.6	*895*	-14.3	-3.6
	총수입 (b=c+d)	*1,000*	*1,316*	31.6	*1,603*	21.8	*1,491*	-7.0	14.2
	덤핑물품 수입(c)	*1,000*	*1,322*	32.2	*1,612*	21.9	*1,418*	-12.0	12.3
	기타국산 수입(d)	*1,000*	*1,208*	20.8	*1,448*	19.9	*2,888*	99.4	42.4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e)	*1,000*	*797*	-20.3	*804*	0.9	*639*	-20.6	-13.9
시장점유율	덤핑물품(c/a)			11.1%p		4.4%p		1.2%p	16.7%p
	기타국산(d/a)			0.4%p		0.2%p		2.8%p	3.4%p
	국내 동종물품(e/a)			-11.5%p		-4.6%p		-4.0%p	-20.1%p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99) 이하 본 보고서에서 %를 단위로 하는 지표(시장점유율, 가격비율 등)의 경우 '증감률'란에 표기된 수치는 각 연도의 전년 대비 또는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변동폭을 의미하며, 그 단위로 %p를 표기함

다.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 가격에 미치는 효과

< 주요 검토사항 >

○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함

○ 덤핑물품이 동종물품에 비해 저가판매 되었는지 또는 덤핑물품으로 인해 동종물품의 가격인하 또는 가격인상 억제효과가 있었는지를 검토함

관련 법규

○ 관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 WTO반덤핑협정 3.2조 중

덤핑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조사당국은 수입회원국의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수입품의 저가판매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품의 영향이 달리 상당한 정도로 가격하락을 초래하는지 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였을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1) 덤핑물품과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비교

○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2년 xxx천원에서 '23년 xxx천원, '24년 xxx천원으로 하락하였다가 '25년 xxx천원으로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1% 하락함

○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2년 xxx천원에서 '23년 xxx천원으로 상승한 후, '24년 xxx천원으로 하락하였다가 '25년 xxx천원으로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4.3% 상승함

2) 덤핑물품이 동종물품의 가격에 미친 영향

가) 덤핑물품이 저가 판매되었는지 여부

○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 대비 '22년 xxx%, '23년 xxx%, '24년 xxx%, '25년 xxx% 수준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동종물품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나) 덤핑물품이 동종물품 판매가격을 하락시켰는지 여부

○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23년 10.2% 하락하였고, '24년 9.5% 하락, '25년 12.1% 상승하여 연평균 3.1% 하락함

○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은 '23년 8.4% 상승하였고, '24년 0.8% 하락, '25년 5.6% 상승하여 연평균 4.3% 상승함

○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되었으며, 특히 '24년의 경우 덤핑물품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xxx% 수준으로 저가 판매되었음

< 덤핑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 비교 >

(단위 : 천원/톤, %)

구분 \ 연도	'22년	'23년	증감률	'24년	증감률	'25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덤핑물품 판매가격(a)	*1,000*	*898*	-10.2	*813*	-9.5	*911*	12.1	-3.1
동종물품 판매가격(b)	*1,000*	*1,084*	8.4	*1,075*	-0.8	*1,136*	5.6	4.3
가격비율(a/b)			-16.3%p		-6.9%p		4.4%p	-18.8%p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다) 덤핑물품이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상승을 억제시켰는지 여부

○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 동종물품 제조원가는 연평균 6.6% 상승하였으나, 덤핑물품의 경우 판매가격이 연평균 3.1% 하락하였으며, ’23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내 동종물품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됨에 따라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은 연평균 4.3% 상승에 그쳐 제조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국내 동종물품의 목표판매가격[100] 대비 실제판매가격 비율은 ‘22년 xxx%에서 ’25년 xxx%로 8.6%p 하락하여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은 목표판매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덤핑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 비교 >

(단위 : 천원/톤, %)

구분 \ 연도	’22년	’23년		’24년		’25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동종물품 판매가격(a)	*1,000*	*1,084*	8.4	*1,075*	-0.8	*1,136*	5.6	4.3
제조원가(b)	*1,000*	*1,112*	11.2	*1,061*	-4.6	*1,211*	14.2	6.6
제조원가비중(b/a)			2.1%p		-3.2%p		6.6%p	5.5%p
덤핑물품 판매가격	*1,000*	*898*	-10.2	*813*	-9.5	*911*	12.1	-3.1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 국내 동종물품의 목표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

(단위 : 천원/톤, %)

구분 \ 연도	’22년	’23년		’24년		’25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목표판매가격(a)	*1,000*	*1,138*	13.8	*1,107*	-2.7	*1,242*	12.2	7.5
실제판매가격(b)	*1,000*	*1,084*	8.4	*1,075*	-0.8	*1,136*	5.6	4.3
가격비율(b/a)			-4.7%p		1.8%p		-5.7%p	-8.6%p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100) 목표판매가격 = (단위당 제조원가 + 단위당 판매관리비) ÷ (1 - 목표영업이익률)
- 목표 영업이익률은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1조제2항 및 <별표1>에 따라 ’22년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내수 영업이익률(xxx%)을 사용

라. 덤핑물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주요 검토사항 >

○ 국내산업의 경영상태에 관한 지표에서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지를 검토함

- 국내산업의 피해지표 : 생산량감소・가동률하락・재고증가・판매량감소・시장점유율축소・가격하락・이윤감소・투자수익감소・고용감소・임금하락・자본조달애로・투자축소, 기술개발 등

관련 법규

○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4.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

○ WTO반덤핑협정 3.4조 중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또는 설비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자금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위에 열거된 요소는 총 망라적이 아니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1) 생산량 및 가동률

○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생산능력은 연간 xxx톤 수준을 유지하였고, 생산량은 '22년 xxx톤, '23년 xxx톤, '24년 xxx톤, '25년 xxx톤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3.9% 감소함

- 이에 따라 국내산업 가동률은 '22년 xxx%, '23년 xxx%, '24년 xxx%, '25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17.3%p 하락함

< 생산현황 >

(단위 : 톤, %)

구분 \ 연도	'22년	'23년	증감률	'24년	증감률	'25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생산능력(a)	*1,000*	*1,000*	0.0	*1,000*	0.0	*1,000*	0.0	0.0
생산량(b)	*1,000*	*766*	-23.4	*779*	1.7	*637*	-18.2	-13.9
가동률(b/a)			-11.1%p		0.6%p		-6.8%p	-17.3%p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2) 판매 및 재고

○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22년 xxx톤에서 ’23년 xxx톤, ‘24년 xxx톤, ’25년 xxx톤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3.9% 감소함

○ 국내 동종물품의 기말재고는 ’22년 xxx톤, ‘23년 xxx톤, ’24년 xxx톤, ‘25년 xxx톤으로 연평균 9.4% 감소함

- 재고율은 ‘22년 xxx%, ’23년 xxx%, ‘24년 xxx%, ’25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0.6%p 상승함

< 판매 및 재고 현황 >

(단위 : 톤, 백만원, %)

구분 \ 연도		’22년	’23년	증감률	’24년	증감률	’25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기초재고(a)	물량	*1,000*	*2,550*	155.0	*1,780*	-30.2	*1,314*	-26.2	9.5
생산량(b)	물량	*1,000*	*766*	-23.4	*779*	1.7	*637*	-18.2	-13.9
총출하 (c=d+e+f+g)	물량	*1,000*	*795*	-20.5	*804*	1.1	*644*	-19.9	-13.7
	금액	*1,000*	*861*	-13.9	*864*	0.3	*731*	-15.4	-9.9
내수판매(d)	물량	*1,000*	*797*	-20.3	*804*	0.9	*639*	-20.6	-13.9
	금액	*1,000*	*864*	-13.6	*865*	0.1	*725*	-16.2	-10.2
수출(e)	물량	*1,000*	*178*	-82.2	*712*	300.0	*2,425*	240.6	34.3
	금액	*1,000*	*155*	-84.5	*629*	305.9	*2,435*	287.0	34.4
내부대체(f)	물량	*1,000*	*1,000*	0.0	*1,000*	0.0	*1,000*	0.0	0.0
타계정대체(g)	물량	*1,000*	*1,000*	0.0	*1,000*	0.0	*1,000*	0.0	0.0
기말재고 (h=a+b-c)	물량	*1,000*	*698*	-30.2	*515*	-26.2	*743*	44.3	-9.4
재고율(h/c)	물량			-0.4%p		-0.9%p		1.9%p	0.6%p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3) 시장점유율

○ 국내 동종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2년 xxx%, '23년 xxx%, '24년 xxx%, '25년 xxx%로 지속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20.1%p 하락함

○ 덤핑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2년 xxx%, '23년 xxx%, '24년 xxx%, '25년 xxx%로 지속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16.7%p 상승함

○ 기타국산 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2년 xxx%, '23년 xxx%, '24년 xxx%, '25년 xxx%로 지속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3.4%p 상승함

○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 추세가 상반된 변동을 보이고, 동종물품의 점유율 하락분(-20.1%p)의 상당분이 덤핑물품의 점유율 상승(16.7%p)으로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임

< 시장점유율 현황 >

(단위 : %)

구분 \ 연도	'22년	'23년	변동폭	'24년	변동폭	'25년	변동폭	변동폭
국내 동종물품			-11.5%p		-4.6%p		-4.0%p	-20.1%p
덤핑물품			11.1%p		4.4%p		1.2%p	16.7%p
기타국산 수입물품			0.4%p		0.2%p		2.8%p	3.4%p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4)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국내 동종물품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22년 xxx천원에서 '23년 xxx천원으로 상승하였다가, '24년 xxx천원으로 하락하였고, '25년 xxx천원으로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6.6% 상승함

- 조사대상기간 중 재료비는 제조원가의 xxx~xxx%를 차지하며 국내 동종물품 가격에 재료비의 영향이 가장 컸을 것으로 보임

- 재료비는 '22년 xxx천원에서 '23년 xxx천원으로 상승하였다가, '24년 xxx천원으로 하락하였고, '25년 xxx천원으로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5.2% 상승함

○ 조사대상기간 중 단위당 제조원가는 연평균 6.6% 상승하였으나,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은 연평균 4.3% 상승에 그침

- 이는 국내생산자가 덤핑물품의 저가판매(연평균 -3.1%)와 시장점유율 상승(16.7%p)으로 인해 내수판매량(연평균 -13.9%) 및 시장점유율(-20.1%p)이 감소·하락하는 상황에서 제조원가 상승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책정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컸기 때문으로 보임

○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대비 제조원가 비중은 '22년 xxx%, '23년 xxx%, '24년 xxx%, '25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5.5%p 상승함

< 내수판매가격 및 제조원가 >

(단위 : 천원/톤, %)

구분 \ 연도	'22년	'23년	증감률	'24년	증감률	'25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동종물품 판매가격(a)	*1,000*	*1,084*	8.4	*1,075*	-0.8	*1,136*	5.6	4.3
단위당 제조원가(b=c+d+e)	*1,000*	*1,112*	11.2	*1,061*	-4.6	*1,211*	14.2	6.6
재료비(c)	*1,000*	*1,087*	8.7	*1,051*	-3.3	*1,163*	10.6	5.2
제조원가 중 재료비 비중			-1.5%p		0.9%p		-2.2%p	-2.8%p
노무비(d)	*1,000*	*1,288*	28.8	*1,288*	0.0	*1,363*	5.8	10.9
경 비(e)	*1,000*	*1,115*	11.5	*996*	-10.7	*1,298*	30.4	9.1
제조원가 비중 (판매가격 대비)			2.1%p		-3.2%p		6.6%p	5.5%p
덤핑물품 판매가격	*1,000*	*898*	-10.2	*813*	-9.5	*911*	12.1	-3.1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5) 덤핑마진의 크기

○ 덤핑물품의 예비덤핑률은 3.66~38.89%로 덤핑마진 크기가 미소마진 이상이고, 덤핑물품의 수입물량과 가격을 감안할 때 덤핑마진의 크기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6) 이윤

○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내수 매출액은 '22년 xxx백만원, '23년 xxx백만원, '24년 xxx백만원, '25년 xxx백만원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0.2% 감소함

- 내수부문 영업이익은 '22년 xxx백만원에서 '23년 xxx백만원으로 59.4% 감소하였다가 '24년 xxx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5년 xxx백만원으로 적자전환함

-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22년 xxx%에서 '23년 xxx%로 하락하였고, '24년 xxx%로 상승하였으나, '25년 ‐xxx%로 음수전환함

< 내수부문 손익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22년	'23년	증감률	'24년	증감률	'25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매출액(a)	*1,000*	*864*	-13.6	*865*	0.1	*725*	-16.2	-10.2
매출원가(b)	*1,000*	*884*	-11.6	*856*	-3.2	*774*	-9.6	-8.2
매출총이익(c=a-b)	*1,000*	*768*	-23.2	*903*	17.6	*498*	-44.9	-20.7
판매관리비(d)	*1,000*	*1,078*	7.8	*1,208*	12.1	*953*	-21.1	-1.6
영업이익(e=c-d)	*1,000*	*406*	-59.4	*547*	34.8	*적자*	적자전환	적자전환
영업이익률(e/a)			-4.4%p		1.4%p		음수전환	음수전환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7) 투자수익률

○ 국내산업의 투자자산총액 대비 영업이익으로 계산된 투자수익률은 '22년 xxx%에서 '23년 xxx%, '24년 xxx%, '25년 -xxx%로 부(-)의 투자수익률로 전환됨

< 투자수익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22년	'23년	증감률	'24년	증감률	'25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총영업이익[101](a)	*1,000*	*402*	-59.8	*542*	34.9	*적자*	적자전환	적자전환
투자자산총액(b)	*1,000*	*1,009*	0.9	*1,131*	12.1	*1,398*	23.6	11.8
투자수익률(c)			-6.3%p		0.8%p		음수전환	음수전환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8) 현금흐름

○ 국내 동종물품과 관련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2년 xxx백만원, '23년 xxx백만원, '24년 xxx백만원 순유입되었으나, '25년에는 xxx백만원 순유출됨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22년	'23년	증감률	'24년	증감률	'25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당기순이익(A)	*1,000*	*1,507*	50.7	*1,581*	4.9	*적자*	적자전환	적자전환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B)	*1,000*	*118*	-88.2	*330*	179.3	*731*	121.8	-10.0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C)	*음수*	*음수*	음수축소	*음수*	음수확대	*음수*	음수축소	음수확대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D)	*음수*	*양수*	양수전환	*양수*	225.6	*음수*	음수전환	음수축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A+B+C+D)	*1,000*	*14,177*	1,317.7	*19,295*	36.1	*음수*	음수전환	음수전환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101) 총 영업이익 = (내수판매 + 수출) 영업이익

9) 고용 및 임금

○ 국내산업의 연평균 고용인원(생산직+사무직)은 '22년 xxx명, '23년 xxx명, '24년 xxx명, '25년 xxx명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0.8% 감소함

○ 1인당 평균임금은 '22년 xxx백만원, '23년 xxx백만원, '24년 xxx백만원, '25년 xxx백만원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5.6% 감소함

< 고용 및 임금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명, %)

구분 \ 연도		'22년	'23년	증감률	'24년	증감률	'25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연평균 고용 인원	생산직	*1,000*	*1,000*	0.0	*1,000*	0.0	*958*	-4.2	-1.4
	사무직	*1,000*	*1,063*	6.3	*1,063*	0.0	*1,000*	-5.9	0.0
	합계	*1,000*	*1,025*	2.5	*1,025*	0.0	*975*	-4.9	-0.8
연평균 1인당 임금	생산직	*1,000*	*980*	-2.0	*1,000*	2.0	*911*	-8.9	-3.1
	사무직	*1,000*	*983*	-1.7	*983*	0.0	*775*	-21.2	-8.2
	합계	*1,000*	*981*	-1.9	*991*	1.0	*841*	-15.1	-5.6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10) 생산성

○ 1인당 생산량은 '22년 xxx톤, '23년 xxx톤, '24년 xxx톤, '25년 xxx톤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3.2% 감소함

○ 1인당 매출액은 '22년 xxx백만원, '23년 xxx백만원, '24년 xxx백만원, '25년 xxx백만원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9.2% 감소함

○ 1인당 부가가치는 '22년 xxx백만원, '23년 xxx백만원, '24년 xxx백만원, '25년 xxx백만원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5.8% 감소함

< 생산성 관련 지표 >

(단위 : 명, 톤, 백만원, 톤/명, 백만원/명, %)

구분 \ 연도	'22년	'23년	증감률	'24년	증감률	'25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고용인원(a)	*1,000*	*1,025*	2.5	*1,025*	0.0	*975*	-4.9	-0.8
생산량(b)	*1,000*	*766*	-23.4	*779*	1.7	*637*	-18.2	-13.9
총매출액(c)	*1,000*	*861*	-13.9	*864*	0.3	*731*	-15.4	-9.9
총부가가치(d)	*1,000*	*816*	-18.4	*894*	9.6	*580*	-35.2	-16.6
1인당 생산량(b/a)	*1,000*	*747*	-25.3	*760*	1.8	*653*	-14.1	-13.2
1인당 매출액(c/a)	*1,000*	*841*	-15.9	*844*	0.3	*750*	-11.1	-9.2
1인당 부가가치(d/a)	*1,000*	*799*	-20.1	*873*	9.3	*598*	-31.5	-15.8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11) 성장성

○ 내수 영업이익은 '22년 xxx백만원에서 '23년 xxx백만원, '24년 xxx백만원, '25년 -xxx백만원으로 악화추세를 보이며 적자전환하였음

○ 시장점유율은 '22년 xxx%, '23년 xxx%, '24년 xxx%, '25년 xxx%로 지속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20.1%p 하락함

○ 가동률은 '22년 xxx%에서 '23년 xxx%로 하락하였다가, '24년 xxx%로 상승하였으나, '25년 xxx%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17.3%p 하락함

< 성장성 관련 지표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22년	'23년	증감률	'24년	증감률	'25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내수 영업이익	*1,000*	*406*	-59.4	*547*	34.8	*적자*	적자전환	적자전환
시장점유율			-11.5%p		-4.6%p		-4.0%p	-20.1%p
가동률			-11.1%p		0.6%p		-6.8%p	-17.3%p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12) 자본조달능력

○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산업의 총 영업이익 및 내수 영업이익은 감소추세를 보이며 적자전환하여 자본조달능력이 악화된 것으로 보임

< 자본조달능력 관련 지표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22년	'23년	증감률	'24년	증감률	'25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총 영업이익[102]	*1,000*	*402*	-59.8	*542*	34.9	*적자*	적자전환	적자전환
- 내수 영업이익	*1,000*	*406*	-59.4	*547*	34.8	*적자*	적자전환	적자전환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13)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103]

○ 국내산업의 설비투자 금액은 '22년 xxx백만원, '23년 xxx백만원, '24년 xxx백만원, '25년 xxx백만원으로 연평균 92.2% 증가함[104]

○ 연구개발비의 경우, '22년 xxx백만원, '23년 xxx백만원, '24년 xxx백만원, '25년 xxx백만원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8% 증가함

<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22년	'23년	증감률	'24년	증감률	'25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설비투자	*1,000*	*4,048*	304.8	*9,420*	132.7	*7,093*	-24.7	92.2
연구개발	*1,000*	*1,294*	29.4	*1,058*	-18.2	*1,118*	5.6	3.8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102) 총 영업이익 = (내수판매 + 수출) 영업이익

103)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개정(2020.12.29.)에 따라 기술개발(연구개발)은 의무 검토사항은 아니나, 신청인이 조사신청서 및 생산자 답변서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국내산업 피해의 종합적 검토 대상에 포함함

104) *비공개*

14) 종합 검토

○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과 관세법령 등에 근거하여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와 통계 등 이용 가능한 자료 및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여 각 산업피해 지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검토를 수행함

○ 예비조사 결과,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증가(연평균 12.3%)하고 시장점유율도 상승(16.7%p)한 반면, 직접적 가격경쟁 관계에 있는 동종물품의 판매량은 감소(연평균 △13.9%)하고 시장점유율은 하락(-20.1%p)한바, 덤핑물품의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과 시장점유율이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비적으로 판단함

-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대비 제조원가 비중은 xxx~xxx%의 높은 수준으로, 덤핑물품의 저가판매와 시장점유율 확대로 인해 내수판매량 및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락하는 상황에서 국내산업은 제조원가 상승분(연평균 6.6%)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는 국내산업의 영업이익 하락 및 적자전환 등 실질적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량(연평균 △13.9%), 가동률(-17.3%p), 내수판매량(연평균 -13.9%) 등이 감소·하락하였고, 내수 영업이익이 적자전환하면서 투자수익률, 현금흐름, 1인당 부가가치 등이 악화되는 등 국내산업 상태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종합하여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산업 주요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실질적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다수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므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우려 여부에 대한 검토는 실시하지 않기로 함

Ⅳ. 덤핑물품과 국내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

1.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관련 법규

○ 관세법 제53조 제1항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관세법 시행령 제63조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3. 덤핑차액의 정도(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4.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
5.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 WTO반덤핑협정 제3.5조

덤핑수입품이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 이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덤핑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한다. 또한 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발전,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를 통하여 포함된다.

○ 조사실은 예비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와 관련 증거 등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검토함

- 첫째,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고(연평균 12.3%) 국내시장 점유율도 xxx%에서 xxx%로 크게 증가하였으며(16.7%p), 이에 따라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동종물품의 점유율은 xxx%에서 xxx%로 20.1%p 하락하였음

- 둘째,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은 국내 동종물품보다 지속 저가에 판매되었고 가격비율은 '22년 xxx%에서 '25년 xxx% 수준으로 18.8%p 하락하면서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 상승 억제에 영향을 미침

 • 국내 동종물품 제조원가는 연평균 6.6% 상승하였으나,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은 '24년 0.8% 하락하는 등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4.3% 상승에 그침. 특히 '23년부터 덤핑물품이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xxx%대 수준의 저가에 판매되며 제조원가 상승분이 동종물품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셋째,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 상승과 저가 판매가 심화됨에 따라 국내 동종물품 생산량, 가동률, 내수판매량 등이 감소·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영업이익 감소, 투자수익률 및 자본조달능력 악화, 1인당 부가가치 감소 등 국내산업 피해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됨

○ 조사실은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여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함

공개용

< 주요 국내산업 피해 지표 >

지표	구분 \ 연도	'22년	'23년	증감률	'24년	증감률	'25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국내소비(톤)		*1,000*	*953*	-4.7	*1,044*	9.6	*895*	-14.3	-3.6
물량 (톤)	덤핑물품	*1,000*	*1,322*	32.2	*1,612*	21.9	*1,418*	-12.0	12.3
	국내 동종물품	*1,000*	*797*	-20.3	*804*	0.9	*639*	-20.6	-13.9
시장 점유율 (%)	덤핑물품			11.1%p		4.4%p		1.2%p	16.7%p
	국내 동종물품			-11.5%p		-4.6%p		-4.0%p	-20.1%p
가격 (천원/톤, %)	덤핑물품(a)	*1,000*	*898*	-10.2	*813*	-9.5	*911*	12.1	-3.1
	국내 동종물품(b)	*1,000*	*1,084*	8.4	*1,075*	-0.8	*1,136*	5.6	4.3
	제조원가	*1,000*	*1,112*	11.2	*1,061*	-4.6	*1,211*	14.2	6.6
	제조원가 비중 (판매가격대비)			2.1%p		-3.2%p		6.6%p	5.5%p
	가격비율(a/b)			-16.3%p		-6.9%p		4.4%p	-18.8%p
	목표판매가격(c)	*1,000*	*1,138*	13.8	*1,107*	-2.7	*1,242*	12.2	7.5
	가격비율(b/c)			-4.7%p		1.8%p		-5.7%p	-8.6%p
생산량(톤)		*1,000*	*766*	-23.4	*779*	1.7	*637*	-18.2	-13.9
가동률(%)				-11.1%p		0.6%p		-6.8%p	-17.3%p
국내 동종 물품 내수	영업이익(백만원)	*1,000*	*406*	-59.4	*547*	34.8	*적자*	적자전환	적자전환
	영업이익률(%)			-4.4%p		1.4%p		음수전환	음수전환
투자수익률(%)				-6.3%p		0.8%p		음수전환	음수전환
현금흐름(백만원)		*1,000*	*14,177*	1,317.7	*19,295*	36.1	*음수*	음수전환	음수전환
연평균 1인당 임금 (백만원/명)		*1,000*	*981*	-1.9	*991*	1.0	*841*	-15.1	-5.6
생산성(1인당 부가가치) (백만원/명)		*1,000*	*799*	-20.1	*873*	9.3	*598*	-31.5	-15.8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2. 덤핑물품 수입 이외 기타 다른 요인의 영향

< 주요 검토사항 >

○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인의 영향에 대해 검토

- 덤핑물품 외의 수입품의 수입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행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발전,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

관련 법규

○ 관세법 시행령 제63조

④ 무역위원회는 덤핑물품 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해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덤핑물품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WTO 반덤핑협정 제3.5조 중

조사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 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 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이들 간의 경쟁, 기술개발, 국내산업의 수출 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를 통하여 포함된다.

가. 덤핑물품 이외의 수입물량 및 가격

○ 덤핑물품 이외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은 '22년 xxx톤에서 '23년 xxx톤, '24년 xxx톤, '25년 xxx톤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42.4% 증가함

-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2년 xxx%, '23년 xxx%, '24년 xxx%, '25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3.4%p 상승함

○ 조사대상기간 중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판매가격이 덤핑물품의 xxx~xxx배 수준으로 훨씬 높았으므로[105]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임

< 덤핑물품 이외의 수입 현황 >

(단위 : 톤, %, 천원/톤)

구분 \ 연도		'22년	'23년	증감률	'24년	증감률	'25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덤핑 물품	수입물량	*1,000*	*1,322*	32.2	*1,612*	21.9	*1,418*	-12.0	12.3
	시장점유율			11.1%p		4.4%p		1.2%p	16.7%p
	판매가격(a)	*1,000*	*898*	-10.2	*813*	-9.5	*911*	12.1	-3.1
기타 국산 물품	수입물량	*1,000*	*1,208*	20.8	*1,448*	19.9	*2,888*	99.4	42.4
	시장점유율			0.4%p		0.2%p		2.8%p	3.4%p
	판매가격(b)	*1,000*	*724*	-27.6	*762*	5.2	*563*	-26.1	-17.4
	가격비율(b/a)			-183.1%p		123.7%p		-302.0%p	-361.4%p
국내 동종 물품	판매물량	*1,000*	*797*	-20.3	*804*	0.9	*639*	-20.6	-13.9
	시장점유율			-11.5%p		-4.6%p		-4.0%p	-20.1%p
	판매가격	*1,000*	*1,084*	8.4	*1,075*	-0.8	*1,136*	5.6	4.3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105) 스웨덴·독일·일본 등 기타국산 물품의 가격은 덤핑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고가로 형성되어 있으며, 신청인에 따르면 해당 국가에서 고가의 제품을 수입하는 사유는 주로 국내에 공장을 둔 외국계 다국적기업이 본사에서 지정한 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임

나. 국내소비 변화

○ 국내소비 규모는 ’23년 4.7% 감소하였다가, ‘24년 9.6% 증가, ’25년 14.3%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6% 감소함

-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23년 20.3% 감소, ’24년 0.9% 증가, ’25년 20.6%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3.9% 감소함

-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23년 32.2% 증가, ’24년 21.9% 증가, ‘25년 12.0%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2.3% 증가하였음

○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소비 감소 폭(연평균 -3.6%)에 비해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는 더 큰 폭으로 감소(연평균 -13.9%)하였고,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오히려 증가(연평균 12.3%)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산업이 국내소비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국내소비 현황 >

(단위 : 톤, %)

구분 \ 연도	’22년	’23년	증감률	’24년	증감률	’25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국내소비	*1,000*	*953*	-4.7	*1,044*	9.6	*895*	-14.3	-3.6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	*1,000*	*797*	-20.3	*804*	0.9	*639*	-20.6	-13.9
덤핑물품 수입	*1,000*	*1,322*	32.2	*1,612*	21.9	*1,418*	-12.0	12.3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다. 수출 실적

○ 국내 동종물품의 수출량은 ’22년 xxx톤에서 ’23년 xxx톤으로 82.2% 감소하였다가, ‘24년 xxx톤으로 300.0% 증가하였고, ’25년 xxx톤으로 240.6%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4.3% 증가함

- 총출하량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2년 xxx%에서 ’23년 xxx%로 감소하였다가, ‘24년 xxx%, ‘25년 xxx%로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0.8%p 증가함

○ 조사대상기간 중 수출량(연평균 34.3%) 및 수출비중(0.8%p)은 증가하였으나, 절대적인 수출물량이 매우 작고, 국내산업 가동률이 xxx~xxx% 수준으로 충분한 추가생산여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수출증가가 내수판매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 수출 동향 >

(단위 : 톤, %)

구분 \ 연도	’22년	’23년		’24년		’25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출하량(a)	*1,000*	*795*	-20.5	*804*	1.1	*644*	-19.9	-13.7
수출량(b)	*1,000*	*178*	-82.2	*712*	300.0	*2,425*	240.6	34.3
수출비중(b/a)			-0.2%p		0.2%p		0.8%p	0.8%p
가동률			-11.1%p		0.6%p		-6.8%p	-17.3%p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라. 주요 원재료 가격 추이

○ 국내 동종물품의 단위당 제조원가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xxx~xxx% 수준이고, 주요 원재료는 액체 수산화나트륨임

- 액체 수산화나트륨의 톤당 가격은 '22년 xxx천원에서 '25년 xxx천원으로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4.7% 상승하였음

○ 조사대상기간 중 액체 수산화나트륨의 가격 변동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과 전반적으로 같은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액체 수산화나트륨의 가격 변동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그러나, 조사대상기간 중 액체 수산화나트륨 가격이 연평균 4.7% 상승함에 따라 재료비가 연평균 5.2% 상승하였음에도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은 연평균 4.3% 상승에 그치고, 특히 '25년의 경우 재료비가 10.6% 상승하였으나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은 5.6% 상승에 그친 것으로 보아,

- 국내산업의 영업이익 악화는 재료비 인상 자체로 인한 것보다는 덤핑물품의 저가 판매와 시장점유율 확대로 인해 국내생산자가 재료비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임

< 주요 원재료 가격 >

(단위 : 천원/톤, %)

구분 \ 연도	'22년	'23년		'24년		'25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액체 수산화나트륨[106]	*1,000*	*1,084*	8.4	*1,041*	-4.0	*1,148*	10.3	4.7
재료비	*1,000*	*1,087*	8.7	*1,051*	-3.3	*1,163*	10.6	5.2
제조원가 중 재료비 비중			-1.5%p		0.9%p		-2.2%p	-2.8%p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	*1,000*	*1,084*	8.4	*1,075*	-0.8	*1,136*	5.6	4.3
덤핑물품 판매가격	*1,000*	*898*	-10.2	*813*	-9.5	*911*	12.1	-3.1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106) 건조중량(DMT, Dry Metric Ton) 기준 수치로, 수분포함중량(LMT, Liquid Metric Ton)으로 환산 시 '22년 *1,000*천원, '23년 *1,084*천원, '24년 *1,042*천원, '25년 *1,149*천원에 해당함

마. 기타 요인

○ **(수입자 주장[107])** 신청인의 수익 악화는 원재료인 액체 수산화나트륨의 과도한 운반 비용, 설비 노후 등에 따른 품질 및 가격 경쟁력 저하에 따른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 **(신청인 주장[108])** 원재료 운반 비용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액체 수산화나트륨이 한화솔루션 울산공장에서 영진 부천공장까지 육로로 운송됨을 전제한 것이나, 실제로는 여수공장에서 5,000~10,000톤급 선박으로 인천 탱크터미널까지 해상으로 운송하여 저장한 후, 신청인의 자체 탱크로리[109]로 인천 - 부천 간 단거리 운송만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설비 노후는 검증되지 않은 추측에 근거한 주장이며, 신청인의 제조 설비는 자체 제작 설비로서 상시 유지보수가 가능하므로 설비에 기인한 경쟁력 저하는 존재하지 않음

○ **(조사실 검토)** 신청인의 원재료 운반 비용이 과도하고 설비가 노후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다만 본조사 과정에서 구체적·객관적 근거와 함께 관련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 다시 검토할 수 있음

바. 무역 제한적 관행 등

○ 이상의 검토 항목 외에 WTO 반덤핑협정 제3.5조에 검토 요소로 열거된 외국 생산자와 국내 생산자의 무역 제한적 관행 및 이들 간의 경쟁 등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인들이 주장 및 증빙을 제출하지 않음

107) 새한실리켐 이해관계인 회의 발언요지('26.6.12. 제출)

108) 영진 이해관계인 회의 이후 추가 의견서('26.7.7. 제출)

109) 액체 및 기체를 대량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탱크를 갖춘 화물 자동차를 의미함

사. 소결

○ 조사대상기간 중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판매가격이 덤핑물품보다 훨씬 높았으므로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임

○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소비 감소 폭(연평균 -3.6%)에 비해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는 더 큰 폭으로 감소(연평균 -13.9%)하였고,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오히려 증가(연평균 12.3%)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소비의 변화가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임

○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산업의 절대적인 수출물량이 매우 작고, 추가생산 여력이 충분한 점을 고려할 때,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수출이 내수부문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임

○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악화된 것은 재료비 인상 자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판매가격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xxx~xxx%로 낮지 않은 상황에서 덤핑물품의 저가 판매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재료비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임. 즉,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는 덤핑물품의 저가 판매 및 시장점유율 확대로 인한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 상승 억제가 국내산업의 영업이익 악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3. 인과관계 종합 검토

○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 수입물량이 증가하고(연평균 12.3%) 국내 동종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대체하는 등 수입물량 측면에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 가격 측면에서도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보다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되고 '23년부터는 국내 동종물품 제조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판매되었으며, 덤핑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동종물품은 제조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상승을 억제한 것으로 보임

○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산업의 생산량 및 판매량은 지속 감소하였고, 가동률 및 국내시장 점유율 또한 하락하였으며, 특히 국내산업의 주요 지표인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적자전환하는 등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한편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 및 판매가격을 검토한바 국내 동종물품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국내소비 감소폭보다 국내 동종물품 판매량의 감소폭은 더 컸으며, 국내산업의 수출 및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 등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 결론적으로, 조사실은 위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덤핑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Ⅴ. 이해관계인 기타의견 검토

1.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

○ **(수입자 주장[110])** 대만, 미국, 독일 등 외국 사례의 경우 액체 수산화나트륨 제조 기업이 고체 수산화나트륨 또한 직접 생산하여 원가를 절감하며, 국내 생산자보다 다양한 제형(펄, 펠릿 등)을 생산하고 있어 경쟁력이 높음

-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 사례와 같이 액체 수산화나트륨 제조 대기업에서 고체 수산화나트륨을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생산자가 보다 다양한 제형을 생산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는 자구 노력이 필요함

○ **(신청인 주장[111])** 국내 대기업이 고체 수산화나트륨을 생산하지 않는 것은 과거 동 품목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던 정책적 요인에 따른 것이며, 현재는 시장 규모가 대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정당화할 수준이 되지 못하여 진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

- 펄·펠릿 타입의 경우 완제품 형태 변경 설비를 추가하면 신청인 또한 충분히 제조 가능하나, 펠릿의 경우 국내 수요량이 매우 적고, 펄의 경우 국내 수요가 일부 존재하나[112] 수입품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어 있어 추가 설비투자 비용 대비 채산성이 확보되지 않아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제형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은 신청인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저가 덤핑수입 그 자체에 있음

○ **(조사실 검토)** 반덤핑조치는 관세법 및 WTO 반덤핑협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덤핑으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무역구제 조치임

-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반덤핑조사에서는 외국 수출자의 덤핑행위, 국내산업의 피해, 그리고 이들 간 인과관계가 주요 검토 대상임

110) 새한실리켐 이해관계인 회의 발언요지('26.6.12. 제출)

111) 영진 이해관계인 회의 이후 추가 의견서('26.7.7. 제출)

112)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일부 수요자가 작업 편의성 등 기호에 따라 펄 타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펄 타입에 대한 국내 수요는 신청인 제품(플레이크 타입)으로 대체 가능한 성격의 수요이며 절대적 수요로는 보기 어려움

Ⅵ. 무역위원회가 결정할 사항

1. 예비긍정 판정 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

관련 법규

○ 관세법 제53조제1항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WTO 반덤핑협정 제7.1조

잠정조치는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개시되고 동 사실이 공표되고 이해당사자에게 정보의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위한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며;

(ii) 덤핑 및 이로 인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에 관한 긍정적 예비판정이 내려지고; 그리고,

(iii) 관계당국이 조사기간 중 초래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고, 조사기간 중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 조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함

1) 부과대상물품

○ 품명 : 고체 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 (caustic soda) solid)

○ 범위 :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고농도로 농축·가공하여 제조한 백색의 고체 수산화나트륨으로, NaOH의 화학식을 가진 것

○ 관세품목분류(HSK) : 2815.11.0000

2)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

공급국 / 관세영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 관세율(%)
중 국	동루이 (Shandong Befar Group Dongrui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인 다음의 기업 - 빈화그룹 (Befar Group Co., Ltd.) - 하이웨 (Binhua Haiyue (Qingdao) Trading Co., Ltd.)	3.66
	스카이 임펙스 (Skyey Impex Limited)	22.21
	유니라이온 (Tianjin Unilion Supply Chain Co., Ltd.)	19.93
	그 밖의 공급자	17.58
대 만	포모사 (Formosa Plastics Corporation)	38.89
	그 밖의 공급자	38.89

* 그 밖의 공급자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물품을 수출한 실적이 없는 해당 공급국 또는 관세영역의 신규공급자를 말함

3)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사유

○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 수입물량은 절대적으로 그리고 국내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했고, 국내 동종물품보다 저가에 판매되어 동종물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 영업이익, 투자수익률 등 국내산업 경영지표가 악화됨

○ 이상의 증거 및 검토를 통해 국내산업이 덤핑물품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었고 조사기간 중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관세법 제53조제1항, WTO 반덤핑협정 제7.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2. 예비부정 판정 시

○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정하고 조사를 종결함

○ 판정 결과를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함

참고 1 국내산업피해 조사 경과

○ ’26. 3.17. : 영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

○ ’26. 4. 7. : 조사개시결정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2026-7호)

○ ’26. 4.13. :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질의서 송부

○ ’26. 4.17.~ 5.14 : 수요자(영진화학, 국도화인켐, 수요자A(xxx)) 및
수입자(남덕물산, 국도화인켐, 미성종합물산,
수입자A(xxx), 수입자B(xxx), 브릿지켐) 답변서 제출

○ ’26. 5.14. : 신청인 답변서 제출

○ ’26. 6.11. : 신청인 이해관계인 회의 발언요지 제출

○ ’26. 6.12. : 수입자(새한실리켐) 이해관계인 회의 발언요지 제출

○ ’26. 7. 2. : 국내산업피해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 ’26. 7. 7. : 신청인, 이해관계인 회의 이후 추가 의견서 제출

참고 2 덤핑사실 조사 경과

○ ’26. 4. 7. : 조사개시결정 공고(무역위원회공고 제2026-7호)

○ ’26. 4. 7. :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당초 답변기한 ’26.5.18.)

○ ’26. 4. 28. : 조사참여신청서 제출기한(조사대상공급자 4개사 중 1개사* 참여)

* 중국 동루이(Shandong Befar Group Dongrui Chemical Co., Ltd.) 및 그 관계사

○ ’26. 5. 6. :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및 CCN 관련 의견수렴기한(이견 없음)

○ ’26. 5. 11. : 동루이 요청에 따른 답변기한 연장(연장후 답변기한 ’26.5.26.)

○ ’26. 5. 26. : 동루이 답변서 접수

○ ’26. 6. 17. : 동루이 대상 제1차 보충질의서 송부(당초 답변기한 ’26.6.24.)

○ ’26. 6. 22. : 동루이 요청에 따른 제1차 보충답변기한 차등연장
(연장후 답변기한 ’26.6.26., ’26.6.30.)

○ ’26. 6. 26. : 동루이 제1차 보충답변서 접수(16개 질의항목에 대한 답변)

○ ’26. 6. 30. : 동루이 제1차 보충답변서 접수(13개 질의항목에 대한 답변)

○ ’26. 7. 2. : 동루이 대상 제2차 보충질의서 송부(답변기한 ’26.7.7.)

○ ’26. 7. 7. : 동루이 제2차 보충답변서 접수

○ ’26. 7. 29. : 예비덤핑률 산정내역 이해관계인 통지*

* 통지대상 : 조사대상공급자(미대응 공급자 포함), 신청인, 공급국 정부 및 관세영역 당국

○ ’26. 8. 5. : 예비덤핑률 산정내역 관련 의견수렴기한(이견 없음)

무 역 조 사 실

무역조사실장　　전 응 길

조　사　단

〔국내산업피해조사〕

조사단장	산업피해조사과장	이 길 준
조 사 관	산업피해조사과	신 여 름

〔덤핑사실조사〕

조사단장	덤핑조사지원과장	김 영 윤
조 사 관	덤핑조사지원과	이 선 덕